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미국세관 방한조사 대응 절차 및 사례



발간사



우리나라는 미국·EU·아세안 등 거대 경제권을 포함하여 10개 협정 49개국과 FTA를 발효 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한-중 FTA 타결로 명실상부한 “FTA 허브국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발맞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FTA를 활용하여 침체된 세계경제 상황 하에서도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FTA 활용확대와 더불어 원산지검증에 대한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지난 6월에는 미국 세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對美 섬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지검증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는 체약상대국 검증당국이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사전 예고 없이 직접 방문하여 검증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미국 세관당국과 원산지 현지검증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우리나라보다 FTA 역사가 긴 미국의 원산지검증 기법과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었고, 그 기법은 곧 우리나라 기업의 효과적인 원산지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는 수출기업체에 원산지검증에 대비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업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과 검증단계에서 유의할 사항 등을 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국내 기업들이 원산지검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체약상대국 세관의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12월
서울본부세관장

정귀영

CONTENTS

01 한-미 FTA 원산지검증 현황

- 1. 품목별로 다른 검증 절차 06
- 2. 섬유류 원산지검증 절차 08
- 3. 미국 세관의 섬유류 원산지검증 현황 11

02 한-미 세관 합동 현지검증 제도

- 1. 주요 검증 대상 물품 16
- 2. 주요 검증 대상 업체 20
- 3. 현지검증 세부절차 21

03 현지검증 단계별 조사내용 및 대응요령

- 1. 방문조사 통지 26
- 2.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확인 28
- 3. 특정 수출건 확인 35
- 4. 공장 확인 43
- 5. 추가 소명 48

Seoul Main Customs



04 기업체 현지검증 대응 사례

- 1. 기업체 대응사례(A섬유) 52



05 검증대응 8대 핵심포인트

- 1. 평소 철저한 원산지관리를 통해 검증 대비 62
- 2.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는 필수 64
- 3. MID 및 연례 기업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66
- 4. 미국 세관의 서면검증 시 대응 철저 68
- 5. 검증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69
- 6. 제한된 시간 내에 원산지 상품임을 적극 입증 70
- 7. 생산·거래 형태별 대책 71
- 8. 현지검증을 對美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 73



06 참고자료

- 1. 한-미 FTA 협정문(섬유류 원산지검증 관련) 76
- 2. 미국 세관의 섬유류 검증 질의서 79
- 3.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결정기준(요약) 84
- 4. 현지검증 관련 문서 양식 87
- 5. 현지검증시 인정된 증빙서류 견본 94



알려두기

이 책자의 내용은 對美 수출기업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한-미 FTA 4.3조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섬유류 합동 현지검증에 한정되며, 또한 법률적인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한-미 FTA 원산지검증 현황

품목별로 다른 검증 절차
섬유류 원산지검증 절차
미국 세관의 섬유류 원산지검증 현황

1

품목별로 다른 검증 절차



한-미 FTA는 일반품목에 대한 원산지검증과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검증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요청하여 실시하는 간접검증, 수출국 관세당국과 수입국 관세당국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현지검증이 있음

근거 규정

- 한-미 FTA 제6장 제6.18조(검증)
- 한-미 FTA 제4장 제4.3조(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규정 내용

- (일반상품) 일반상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방법으로 직접검증 방식을 규정(제6.18조)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질의(직접·서면검증)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수입국 관세 당국이 직접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을 방문(직접·현지검증)하여 조사하는 방법임
- (섬유 또는 의류 상품)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해서는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국 관세당국에 간접검증을 요청하거나(제4.3조 제3항), 수출국 관세당국과 수입국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현지검증을 하도록 규정(제4.3조 제5항)하고 있음
 - 다만, 섬유류에 대해서도 제6.18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 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질의(서면검증)하는 경우에는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 당사국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즉,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 섬유류에 대하여 미국 세관이 미국 내 수입자에게 정보제공 요청(CBP Form 28)을 하는 경우 미국 내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 입증서류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따라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해서는 간접검증과 한-미 합동 현지검증 뿐만 아니라 수입자를 통한 정보제공 요청에도 대비해야 함

한-미 FTA 원산지검증 절차

협정규정	원산지검증 절차	검증대상
제6.18조	①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에게 정보제공 요청 ②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③ 수출자, 생산자 사업장 방문조사 ④ 섬유 또는 의류상품(제4.3조의 절차) ⑤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합의하는 절차	일반 상품
제4.3조	① 수출국 관세당국에 검증요청(간접검증) ② 수출국 관세당국에 불법행위 및 원산지조사 요청(간접검증) ③ 위 ①, ②에 따른 현지검증(한-미 합동조사)	섬유류 제품

2 섬유류 원산지검증 절차



- 섬유류에 대한 원산지검증은 간접검증이 원칙이나 현지검증의 경우에는 한-미 관세당국이 공동으로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방문하여 수행함
- 간접검증 절차는 수입국의 검증요청 ⇒ 수출국 세관의 수출자·생산자 조사 ⇒ 검증결과 회신의 순으로 진행
- 현지검증 절차는 수입국의 검증요청 ⇒ 한-미 세관 합동 현지검증 ⇒ 검증 결과 송부(수출국 → 수입국) ⇒ 수입국의 조치 예정사항 통지(수입국 → 수출국) ⇒ 최종 결정(수입국)의 순으로 진행

근거 규정

- 한-미 FTA 제4장 제4.3조(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세관협력)

규정 내용

가. 간접검증(협정 제4.3조 제3항)

- 수입국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국 관세당국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수입국 관세당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의 검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입국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함

나. 불법행위 등 조사(협정 제4.3조 제5항)

- 수입국 관세당국이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검증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다른 FTA에 없는 특유의 제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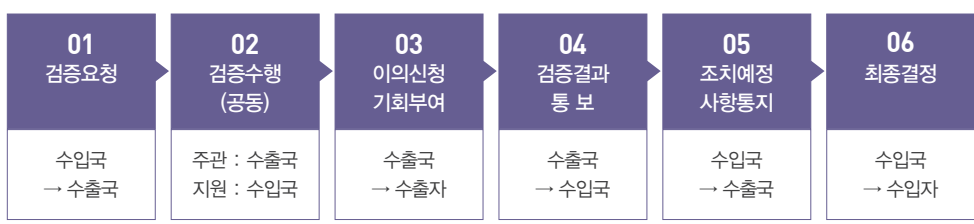
다. 한-미 세관 합동 현지검증(협정 제4.3조 제6항)

- 한-미 관세당국은 위 가, 나에 따른 원산지 검증 및 불법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공동으로 현지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방문조사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짐

섬유류의 원산지검증 방법

구분	대상자	검증 주체	검증 범위
① 간접검증	수출자·생산자	수출국 세관	원산지 검증
② 불법행위 등 조사		수출국 세관	원산지 검증 및 불법행위 조사
③ 합동 현지검증		한-미 세관 합동	원산지 검증 및 불법행위 조사

합동 현지검증 절차



가. 검증요청(제4.3조 제6항)

-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모든 인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원산지 검증 또는 불법행위를 조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출 당사국에 검증을 요청하여야 함

나. 검증수행(제4.3조 제6항 및 제8항)

- 합동 현지검증의 주체는 수출국 관세당국이며 수입국 관세당국은 수출국 관세당국의 검증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입국 관세당국도 질문을 통해 검증을 지원할 수 있음
- 모든 방문은 수출자·생산자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지며,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국 관세당국은 특혜관세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현지검증시 검증대상 기업은 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검증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수입국은 특혜관세 대우의 적용을 중지할 수 있음

다. 이의신청 기회부여

- 현지검증 종료 후 수출국 관세당국은 조사결과를 수출자·생산자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며,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 통지를 접수한 후 30일 이내에 이의 제기 가능

라. 검증결과 통보(제4.3조 제9항)

- 수출국 관세당국은 검증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

마. 수입국 조치 예정사항 통지(제4.3조 제11항)

- 수출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현지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수입국 관세당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예정사항을 수출국 관세당국에 통지

바. 협정관세 배제 등 최종결정(제4.3조 제10항 및 제11항)

- 수입국 관세당국은 검증 대상인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수출하였거나 생산한 업체가 수출·생산한 상품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 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협정의 양 당사국은 비원산지 물품의 우회 수출에 관여된 것으로 결정한 업체 또는 섬유·의류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업체를 공개할 수 있음

3 미국 세관의 섬유류 원산지검증 현황

검증 동향¹⁾

- 2012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미국이 섬유류 수입과 관련하여 징수한 관세는 약 124억 달러로 전체 관세 징수실적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관세율과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원산지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섬유와 의류제품에 대해서는 매년 원산지 위험국가와 우범기업을 선정하여 강력한 검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섬유류 해외 검증팀이 9개국 174개 공장을 현지 검증하여 약 39%에 이르는 원산지 위반을 적발하였음
- 섬유류에 대해서는 일선 세관에서 실시하는 사후 검증절차와 별도로 미국 CBP(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관세 및 국경보호청) 산하 섬유위험관리센터(뉴욕 소재)가 우범물품 선별기법에 의하여 해외 현지검증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등 특별한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지검증의 특성

- 섬유류 해외 현지 검증은 미국 CBP의 국제무역국(Office of International Trade)이 주관하는 업체단위 현장검증으로서 업체의 조직구조, 생산능력과 협력업체 등 전반적인 생산·거래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기업심사의 성격을 띠
- 중점 검증사항은 수출국내 생산시설 확인 및 직접 생산 여부임



- ▶ 섬유류 해외 검증팀(TPVT: Textile Products Verification Team)은 미국의 섬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1년 미국 관세청에 설치한 '점프 검증팀(Jump Team)'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서, 팀장은 수입물품 전문관이 주로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분청 직원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 ▶ 해외 검증팀은 미국 CBP의 기업심사 전문관(Auditor), 국제무역전문요원(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 ICE(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의 수사요원, 일선세관 수입물품 검사전문관(Import Specialist)으로 구성됨

1) 미국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bp.gov/sites/default/files/documents/Textile%20Fact%20Sheet%202013.pdf>

검증 단위

수입건별 검증(Single Transaction)

1) 검증절차

- 특정수입 건에 대한 검증으로서, 수입자에게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송부하여 원산지 증빙자료를 요구하며, 필요 시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직접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2) 선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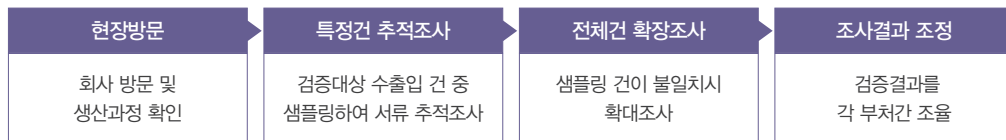
- 미국 CBP에서 전략적으로 검증을 하려는 업종(섬유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류 등)의 수입신고 건 또는 부정수입 등의 정보가 있는 기업의 수입신고 건
-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Compliance Measurement System)의 평가점수가 낮거나, 내부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도가 높은 업체(주로 최근 수입 업체 등에서 수입신고한 건

업체단위 검증(Total Transaction)

1) 검증절차

- 특정회사의 전체 수입 건에 대한 검증으로서, 방문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수출자에게 원산지검증 질문서(CBP Form 446)를 송부하여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 상태를 판단한 후 방문조사를 실시

방문검증 절차



● 중점 확인사항

- 첫째,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수출국에 생산시설이 있는지, 수출물품이 당해 공장에서 실제 생산되는지 여부임
- 둘째, 수출자가 원산지 증빙자료를 실제로 보관하고 있는지 등 그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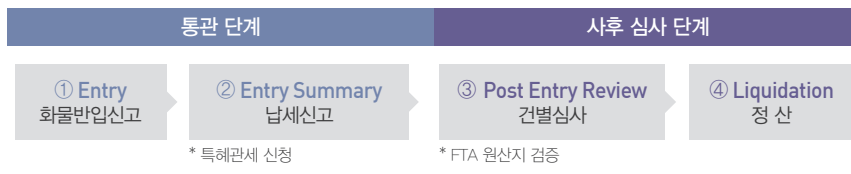
2) 선정기준

-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Compliance Measurement System)에 의해 고위험 업체로 선정된 집중심사(Focused Assessment)대상 업체
-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및 자율적 법규준수도(Informed Compliance) 평가점수가 낮은 업체
- 부정수입 등의 정보가 있는 업체

우리나라 검증 제도와 비교

- 미국은 화물 반입신고 및 납세 신고일부터 10개월 또는 314일 이내(최장 3년까지 연장 가능)에 세액 정산 및 확정(Liquidation)이 이루어지며 세액 정산 및 확정(Liquidation) 결과에 따라 세액을 납부함
- 수입신고건별 원산지 검증은 납부세액 확정(Liquidation) 이전에 이루어지며 원산지 검증 결과에 따라 정산과정을 거치므로, 수입신고 수리, 납세 이후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검증과는 검증 시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임

미국의 수입통관 및 세액심사



- FTA 원산지검증도 사후세액심사의 한 종류로 취급되어 통관지세관의 심사팀(Commodity Specialist Team)이 수행함

우리나라와 미국의 원산지검증 제도 비교

구분	서면 검증			현지 검증		
	주체	시점	대상	주체	시점	대상
한국	원산지검증팀	수입신고 수리 후	특정 수입신고건	원산지검증팀	국내조사 이후	특정 수입신고건
미국	통관지 세관 사후심사팀	정산 이전단계	특정 인보이스건	국제무역국 해외현장검증팀	정산 이전단계	업체단위 검증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한-미 세관 합동 현지검증 제도

주요 검증 대상 물품

주요 검증 대상 업체

현지검증 세부절차

1

주요 검증 대상 물품



'14년 6월 미국 관세당국의 요청으로 한-미 FTA 발효('12년 3월) 이후 처음으로 對美 수출 섬유 및 의류에 대한 한-미 세관 합동 현지검증이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한 수출 또는 생산업체(총 1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음

미국의 검증요청 배경

- 섬유 및 의류상품은 한-미 FTA 체결 이전부터 미국의 최대 관심 품목이자 민감 품목이었으며, 협정 발효 3년차에 실시한 이번 현지검증은 對美 수출 섬유류에 대한 본격적인 원산지 검증의 신호탄임
- 미국의 주요 검증 목적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중국 등 제3국산의 우회수출 또는 불법 환적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실제 생산 여부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무역에 관한 불법행위 관여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함

검증 대상 물품 범위

- 현지검증 대상은 한-미 FTA 부속서 4-가(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관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규정하는 상품에 한정됨

검증대상물품	HS
방직용 섬유제의 가방	42류 중 HS 4202.12, 4202.22, 4202.32, 4202.92의 해당 물품
방직용 섬유와 섬유의 제품	50류 ~ 63류
유리섬유와 이들의 제품	70류 중 HS 7019
이불류	94류 중 HS 9404.90의 해당 물품



주요 검증 대상 고위험 물품

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1) 제3국산 우회수출 예상물품

- 제3국산 수입량이 많아 우회수출이 우려되는 물품 및 홍콩 등 제3국에서 송품장을 발행하는 거래형태의 물품 등 제3국산 물품이 한국산 제품으로 원산지 세탁 후 미국으로 우회 수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

2) MID* 정보를 기초로 생산시설이 없다고 추정되는 업체의 수출품

- 미국은 자국으로 수입되는 섬유 상품에 대해서는 실제 생산자를 MID 정보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생산시설이 없다고 추정되는 수출업체를 MID 정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현지검증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음

* MID : 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미국의 섬유류 생산자 식별코드(P.18 참조)

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1) 엄격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제품

- 대부분의 섬유제품은 역내에서 방적된 원사를 사용(Yarn-forward)하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나, 제60류의 편물제품에 사용되는 면사는 반드시 한국산 또는 미국산 원면을 사용(Fiber-forward)한 경우에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제60류의 편물제품은 집중검증 대상임

※ 우리나라는 원면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어 역외산 원면을 사용하거나 혼용하면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음. 즉, 면제 편물제품은 Yarn-forward가 아니므로 주의 요망

2) 탄성사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제품

- 원재료에 탄성사가 포함되는 모든 제품(예 : 장갑, 양말, 스타킹 등)은 최소허용기준(비원산지 재료를 총 중량의 7% 이내에서 사용 가능)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역내산 탄성사를 사용해야 함 (한-미 FTA 제4.2조 제7항)

- 우리나라는 중국산 탄성사 수입량이 많아 이를 사용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참고 ▶ 미국의 생산자 식별코드(MID, Manufacturer Identification Code)

- 미국 수입자가 섬유제품의 실제 생산자 정보를 미국 세관에 신고하게 하는 제도로써, 허위기재로 인정될 경우 수입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수입 섬유류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미국 관세법 19 CFR 12.130(f))
- 수출자는 정확한 생산자 정보를 선하증권 및 상업송장에 명기하여 송부해야 하고, 수입자는 수입통관시 모든 서류에 동 정보를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정보가 불충분할 경우 세관은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MID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거부가 가능하며, 심사를 받은 기록이 있거나 의심사항이 있을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음

생성 절차

우리나라에는 별도의 MID 생성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며, 미국 수입자가 수출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거 MID 코드를 생성하며, 주소 변경 시에도 별도의 절차 없이 새로운 MID 코드로 신고하면 됨

코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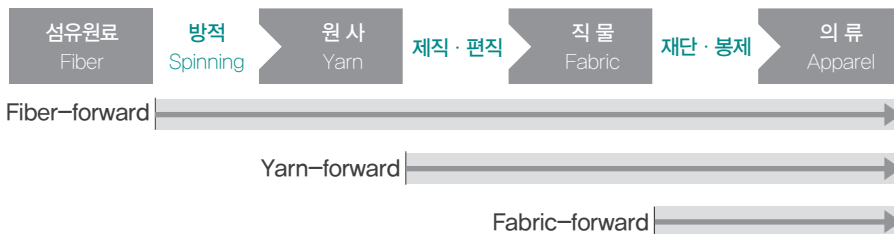
- 최고 15자리의 문자로 구성되며, 그 순서는 국가(2자리) - 회사명(6자리) - 주소번지(4자리) - 도시명(3자리) 순으로서, 첫 두 자리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 국가 국제표준기구(ISO) 코드를 사용해야 함(한국의 경우 'KR')
 - * 강남구 언주로 1234번지 가나어패럴의 경우 : "KRGANAAP1234SEO"
- 구두점 및 띄어쓰기를 사용하지 않고, 한 글자로 된 영문 머리글자와 정관사, 부정관사, 전치사, 접속사 등을 생략하며, 작성된 코드번호는 총 15자리를 초과할 수 없음
- 동일 선적품에 2개 이상의 생산자가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개별적인 MID 코드를 신고하여야 함

MID 정보제공 시 유의사항

- MID 신고는 우리나라 수출자가 아닌 미국 수입자의 의무이나,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그 책임이 국내 수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전가될 수 있고, 미국 세관은 MID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현지검증 대상 업체로 선별하므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해당 제품의 생산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함

참고 Fiber-forward, Yarn-forward, Fabric-forward란?

- Fiber-forward(섬유원료기준) : 원사, 직물 또는 의류를 만들 때 사용되는 섬유원료(Fiber)가 역내산일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Yarn-forward(원사기준) : 직물 또는 의류를 만들 때 사용되는 원사(Yarn)가 역내산일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 Fabric-forward(직물기준) : 의류 또는 섬유제품을 만들 때 사용되는 직물(Fabric)이 역내산일 경우에만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



원사기준(Yarn-forward)의 원산지결정기준(예시)

6201.19 오버코트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6201.19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해설 수출품이 HS 제6201.19호에 분류되는 남성용 오버코트인 경우 한-미 FTA에서는 위 예시와 같은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며, 원재료로 제52류에 분류되는 면사 또는 면직물(HS 5204~5212)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역내에서 방적된 면사(또는 역내에서 방적된 면사로 만든 면직물)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한국산으로 인정되는데 이를 “원사기준”이라함

2 주요 검증 대상 업체

미 CBP의 정보제공요청(CBP Form 28)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입증자료 불충분” 판단을 받은 업체

- 미국 세관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의심이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정보제공 요청서(CBP Form 28)를 송부하여 원산지 입증관련 정보를 요청하며, 수입자가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에게 자료를 요청함
-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 수출자가 충분한 원산지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현지검증 대상 업체로 선정될 수 있음

섬유류 연례 기업정보와 MID정보가 다른 업체

- 미국 수입신고 시 신고된 MID 정보와 우리나라가 한-미 FTA 규정에 따라 제공한 섬유류 생산자의 “연례 기업정보”를 비교하여, MID에는 생산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례 기업정보는 제공하지 않은 업체 또는 미국으로의 수입량이 연례 기업정보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업체

참고 ▶ 섬유류 연례 기업정보

- 한-미 FTA(제4.3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매년 미국 측에 제공하는 對美 수출 섬유·의류 제품 및 그 원료 생산 기업의 생산관련 정보(제공경로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산업통상자원부 → 미국)
- 제공정보 : ① 업체명(상호), 주소(소유 설비 소재지 포함) ② 전화번호 및 e-mail 주소 ③ 경영진의 성명, 국적, 직위 ④ 근로자 수 및 업무 ⑤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 및 생산능력 ⑥ 보유설비 현황 ⑦ 주당 설비가동시간 ⑧ 원료 공급처 ⑨ 미국 내 고객정보

3 현지검증 세부절차

검증 내용

- 미국 세관은 “현지검증의 의의는 생산시설 확인에 있다”고 할 만큼 검증대상 수출품이 우리나라에서 실제 생산되고 있는지(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시함
 - 사전 인터뷰에서 생산공정, 설비현황, 생산능력 등을 파악하고, 실제 공장 확인을 하면서 인터뷰 시 질문 내용과 실제 현황을 대조하여 생산공정 운영 실태, 역외산 원재료 사용여부 및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출 여부를 확인함
 - 「원재료 구매 → 생산 → 선적 → 수출」 전 과정을 증빙 자료를 통해 각 단계별로 상호 연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산지 입증 가능한지 여부와 자료보관 상태 등을 확인함

검증대상 선별

- 미국 세관은 최근 수출건('14년 6월 현지검증시에는 '13년 11월~'14년 3월 수출 1~2건) 관련 인보이스의 MID 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업체를 현지 검증 대상업체로 선정

세부 검증 절차

01 방문조사 통지	02 조사 안내	03 조사 동의	04 인터뷰를 통한 조사	05 공장 확인
방문조사 동의요청	조사배경 및 법적 근거	조사통지 및 동의서 서명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특정 검증대상 수출건 조사	생산설비 및 생산능력 등에 대한 실사

가. 방문조사 통지

-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방문조사는 수출자·생산자 등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지며, 검증팀이 업체에 도착하여 조사를 통지하고 동의를 요청함

* 방문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는 수출(생산) 업체의 자율적 판단 사항이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제4.3조 제6항 및 제10항에 따라 특혜배제 대상이 됨

나. 조사안내

- 사전통지 없이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검증팀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조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 및 법적근거를 설명

* 한-미 FTA 제4장 및 제6장

다. 조사 동의

- 검증팀은 조사통지서, 납세자권리헌장 등을 대상 업체에 교부하고, 업체에서는 조사동의서, 납세자권리헌장 수령증 등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사에 동의

* 업체는 변호사,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여 의견 진술 가능

* FTA특례법 제13조제9항, 관세법 제112조

라. 인터뷰를 통한 조사

- 원산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생산시설 확인 등은 한국 세관 검증팀이 주관하고, 필요시 미국 세관 검증팀도 자료제출 요구 및 질의 가능

* 인터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 파트는 검증 대상 업체의 거래, 생산 일반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인터뷰, 두 번째 파트는 검증대상이 되는 특정 수출건의 상세내용에 대한 인터뷰로 진행되며,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함

마. 공장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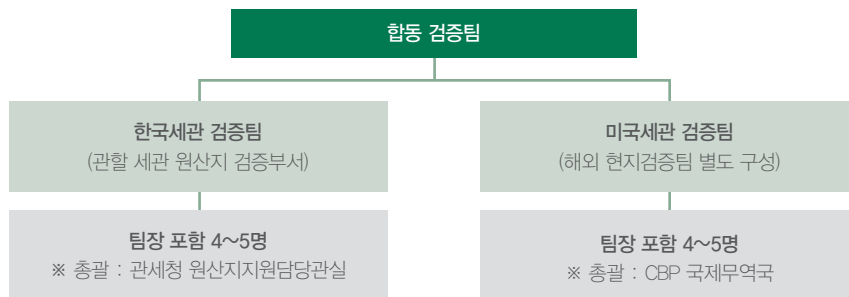
- 양국 검증팀은 업체의 일반현황과 특정 수출 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생산설비 및 생산능력 확인을 위하여 공장 확인을 실시하며, 업체는 검증팀이 공장 확인을 하는 동안 인터뷰시 제출하지 못한 입증서류를 준비

검증팀 구성

- 검증팀의 규모는 조사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14년 6월 한국세관 검증팀은 검증대상 기업 소재지 관할 세관의 원산지검증 담당직원 4~5명으로 구성
- 미국 세관 검증팀은 CBP의 기업심사 전문관, 국제 전문요원, ICE의 수사요원 및 일선세관 수입물품 검사전문관 등 4~5명으로 구성

* 검증팀장은 국제무역국(Office of International Trade) 소속이며, 검증팀은 일선세관 수입물품 검사전문관(Import Specialist)과 국제 무역 전문관(International Trade Specialist)이 검증을 주도하고, ICE(Immigration & Customs Enforcement) 소속의 수사요원도 참여

합동 현지검증팀 구성



3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현지검증 단계별 조사내용 및 대응요령

방문조사 통지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확인
특정 수출건 확인
공장 확인
추가 소명

1 방문조사 통지

현지 방문조사는 사전통지 없이 이루어지며 현지 검증팀이 방문 당일에 조사사실을 통보하고,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특혜 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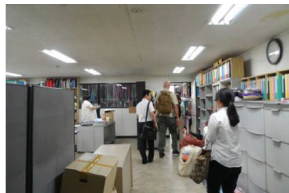
현지검증 통지

-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서는 관세당국이 현지검증 전에 조사계획을 통보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방문조사를 실시하나, 한-미 FTA 섬유류에 대해서는 업체를 사전통보없이 방문조사함
- 방문조사 당일에 검증팀이 업체를 방문하여 검증목적을 설명하고, 대상업체가 조사거부시 미국 수입자가 수입통관시 적용받은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 문의
- 업체 책임자가 방문조사에 동의하면 조사에 착수하게 되나,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조사팀은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함
 - * 방문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는 수출(생산) 업체의 자율적 판단 사항이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 제4.3조 제6항 및 제10항에 따라 특혜배제 대상이 됨
- 모든 절차는 한국세관 검증팀의 우리말로 진행하고 통역관이 영어로 통역하여 미국 세관 검증팀과 공유하게 됨

방문조사 동의 절차



① 현지검증팀이 조사대상 업체에 도착하면 외부에서 대기



② 최소인원이 먼저 검증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동의를 요청



③ 방문조사에 동의하면 대기하던 검증팀도 합류하여 검증이 시작됨



유의사항

가. 조사를 기피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함

- 검증팀의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하여 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경우 조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며, 이후 조사과정에서 검증팀은 해당 업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음
- 책임자 부재 시에도 조사 동의여부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며, 평소 방문조사에 대비한 대응요령 훈련 필요

대응 미흡 사례

- 경기도 소재 ○○업체는 여러 명의 검증팀이 회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에 당황하여 거칠게 항의하는 바람에 조사가 지연되었고, 조사결과 동사가 실제 수출물품을 생산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임에도 이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 인천 소재 ○○업체는 공장 구조가 외부로부터 밀폐된 구조로 되어 있고 기계설비의 소음이 심하여 검증팀의 방문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대응이 지연되었음

나. 방문조사에 사전적으로 대비해야 함

- 수출자가 한-미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수출품의 HS 코드가 한-미 FTA에서 규정하고 있는 섬유 및 의류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검증대상 업체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음
-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한-미 양국 간의 품목분류 차이로 우리나라에서 수출시에는 비섬유류로 분류하였으나 미국 수입시에 섬유류로 특혜 신청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對美 수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검증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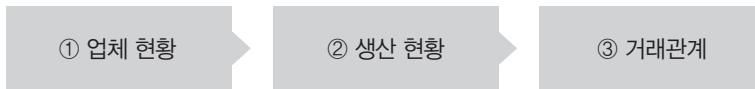
2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확인



- 업체의 전반적인 사업현황, 생산시설 보유여부와 설비 소재지, 주요 생산물품 및 수출 현황, 관계회사 및 협력업체 현황 등에 대한 확인 단계
- 이 단계에서 파악된 내용은 후속 절차(특정 수출건 확인 및 공장 확인)에서 사실여부를 확인하므로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는 답변이 필요

확인 절차

- 본격적인 조사의 첫 번째 단계로 업체 일반현황, 생산현황,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가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됨



- 사업 현황(회사 설립일자, 생산시설 소재지, 연간 생산량, 관계회사, 협력업체 등)과 관련된 기본 수준의 질의와 응답을 통해 검증팀은 후속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결정함
- 기본적인 질문서는 있으나(※참고자료2 미국 세관의 섬유류 검증 질의서 참조),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업체의 답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문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추가 질문이 계속됨
- 방문조사 중에는 한-미 양측의 전문 통역관이 통역하므로 다음과 같은 통역순서에 따라 답변하여 의사전달에 혼선이나 오인의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01 한국 검증팀 질문	02 한국 통역관 통역	03 업체 답변	04 한국 통역관 통역
한국어	영어	한국어	영어
01 미국 검증팀 질문	02 미국 통역관 통역	03 업체 답변	04 미국 통역관 통역
영어	한국어	한국어	영어

- 해외영업 또는 수출입 담당자가 영어 구사능력이 있더라도 부정확한 답변은 부정적인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통역을 거쳐 답변하는 것을 권장함

유의사항

가. 대응 초기에 원산지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함

- 방문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업체당 3~4시간 이내로 짧은 시간에 원산지 조사를 마치게 되므로 대응 초기에 ‘우리 회사는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증빙자료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
- 검증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고,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당황하여 잘못된 답변을 하거나 엉뚱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

나. 인터뷰에 응할 담당자 선정

- 반드시 CEO가 인터뷰에 응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수출거래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리자가 인터뷰에 응하고, 생산·수출·원산지관리를 담당하는 분야별 실무자가 배석하여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답변 시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정확한 내용을 답변
- 해당분야 실무자가 즉시 조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까지 참석할 수 있는지 알려 주고 다른 분야에 대하여 먼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검증 대응 미흡 사례

- 경기도 광주 소재 ○○업체는 조사 당일에 수출입 및 생산관리 담당자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인사담당자가 인터뷰에 응하였음
- 업무가 다르다보니 정확한 수출내용과 수출품 생산업체 및 원재료 공급처를 알지 못한 채 인터뷰를 하게 되었으며, 검증대상 수출건에 대한 증빙자료로 타 협력업체에서 생산한 물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등 검증 결과가 부정적이었음
- 다행히 방문조사 다음날 실제 수출품 생산업체를 확인하고 그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았으나, 인터뷰에 응하는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상기하게 되는 사례였음

- 원산지 입증자료는 방문조사 당일 현장에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므로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현장에서 제출하되, 현장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분한 자료를 구비하여 검증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가 제출하는 것도 가능함

다. 일관성 있는 답변

-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확인은 다소 간단한 질문과 답변으로 진행되나, 이어지는 특정 수출 건에 대한 조사와 공장 확인의 방향설정 정보로 활용됨
- 이 단계에서 제공된 모든 답변과 자료는 이후 특정수출 건에 대한 조사와 공장 확인 단계에서 비교·대조하여 재확인되므로,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확인, 특정수출건 확인, 공장 확인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일관된 답변과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인터뷰 내용 및 답변 가이드

가. 업체 현황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귀사의 주요 사업 분야는 무엇이며, 설립일자는 언제입니까?	√ 회사소개서 또는 홍보용 브로슈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계회사 목록	•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확인 • 실제로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지 여부 확인 • 위탁생산의 경우 실제 국내에서 생산되는지 여부 확인
귀사의 대표자는 누구이며 실제 소유주와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귀사는 관계회사가 있습니까? 관계회사의 업체명과 소재지를 알려주십시오.		

답변 가이드

- 비원산지 물품의 우회수출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하여 관계 회사, 협력업체, 수출거래 관계 등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자 함
- 제3국(중국 등)에 관계 회사나 생산시설이 있는 경우 비원산지 물품이 우회수출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질문임
- 계열사 등 관계회사와 협력업체 현황 자료를 평소에 준비하여 필요시 제출하고, 해외 생산 시설이 있거나 수입원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산지 물품(재료)과 비원산지 물품(재료)을 엄격히 구분·관리하고 있음을 설명

나. 생산 현황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귀사는 생산시설(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공장등록증 사본 (영문본이 있는 경우, 영문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가 실질적인 제조업체인지의 여부 ·수출물품의 국내 제조 여부, 역외산 원재료 투입가능성 확인
공장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주요 생산물품은 무엇입니까?	√ 구두 설명 및 자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체의 생산 능력을 확인하여 수출품의 국내 생산여부 확인
월간(혹은 연간) 생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답변 가이드

- 검증대상 수출물품의 실제 생산여부와 미국으로 수출되는 물량 이상의 생산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함
- 직접 생산하는 업체인 경우 생산량 등을 답변할 때 사실 관계와 생산자 연례 기업정보 입력 사항을 고려하여 답변
- 생산시설이 다수이거나 협력업체가 많은 경우에는 각 수출물품 별로 별도의 생산시설 목록이나 협력업체 명단을 평소에 준비하여 필요시 제출

다. 거래관계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귀사의 내수 대비 수출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 구두 설명 및 자료 제공	• 업체의 수출 규모 파악 • 실제 미국 수입시 FTA활용률과 수출자의 FTA활용률을 비교하여 우회수출 여부 파악
총 수출 대비 미국수출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미국 외 주요 수출 국가는 어디입니까?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 중 FTA 활용률은 몇 % 정도입니까?		
귀사는 수출품 생산에 협력업체를 동원합니까? 협력업체의 업체명과 소재지를 알려주십시오.	√ 협력업체 목록	• 업체의 생산라인 파악 • 전반적인 원산지 관리현황 추정 • 원재료 조달처, 원산지결정기준과 관련된 생산공정의 국내 수행여부(전량 자체 생산인 경우 본 질문은 생략됨)
협력업체는 어떤 작업을 수행합니까? 자체 생산작업 대비 협력업체의 작업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 구두 설명 및 자료 제공	

답변 가이드

- 검증대상 업체의 수출 규모, 검증대상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원재료의 조달처 등을 파악하고자 함
- 수출자가 협력업체를 통하여 생산하고 그 과정만 관리하는 경우 협력업체 목록과 협력업체에서 수행되는 각각의 생산공정을 명확히 해야 함
- 협력업체 목록을 제시하는 경우 위탁생산 횟수, 공정 수행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협력업체 목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 이어서 진행되는 검증대상 특정 수출건에 대한 인터뷰시 해당 검증건의 공정을 수행한 협력업체 이름이 이 단계에서 제공되는 협력업체 목록에 없으면 답변 내용의 신뢰도가 떨어짐
 - 평소 협력업체 목록(업체명, 소재지, 수행공정 등)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위탁생산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협력업체 목록과 각 업체가 수행한 공정내역을 매 수출건별로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음

참고 ▶ 미국 세관의 섬유류 검증 질의서 상 질문내용

가. 업체 현황

Date Company Established : _____

회사 설립일자

Name and Location of Owner : _____

소유주의 성명/소재지

Related Companies and Locations (Request List) : _____

관계 회사 및 소재지 (목록 요청)

나. 생산 현황

Merchandise Produced : _____

생산물품

Knit? : _____ (편물) Woven? : _____ (직물) Both? : _____ (둘 다 해당)

Estimated Production per Month : _____

월간 생산량

다. 거래관계

Percentage exported to U.S. : _____

미국 수출비율

Percentage to other countries : _____

기타 국가 수출비율

Percentage of exports to the U.S. claiming preference :

미국으로의 특혜신청 수출 비율

Subcontractors used (Request list of names and addresses) :

생산에 동원된 협력업체 (업체명 및 주소 목록)

Type of work performed by subcontractors :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Percentage :

비율

Subcontract for (Request list of names and addresses)

협력계약의 대상 (업체명 및 주소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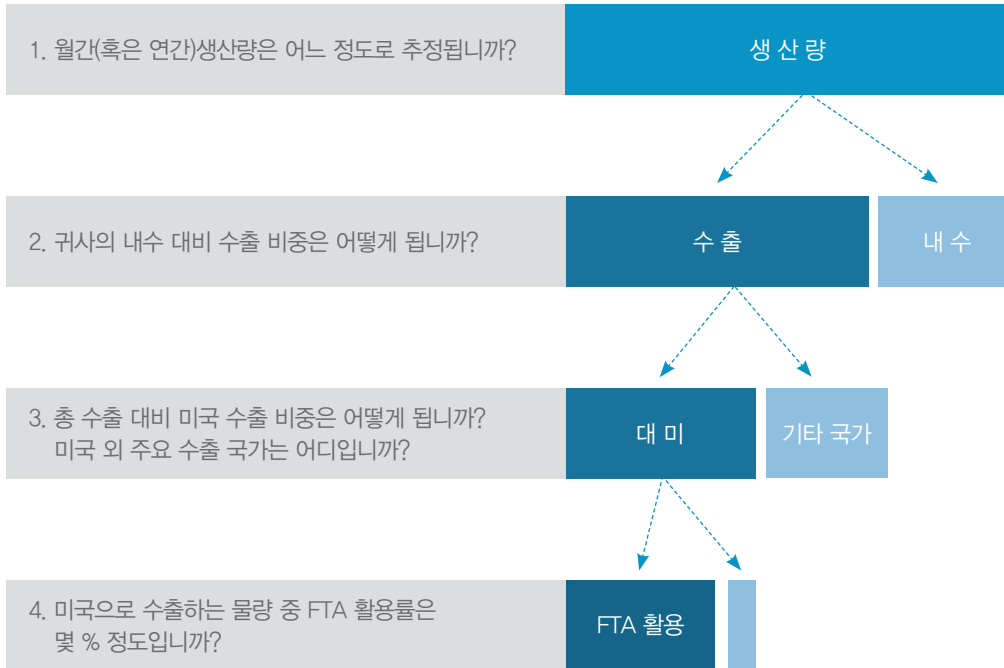
Type of subcontracting performed

수행된 하도급 유형

Percentage :

비율

참고 > 인터뷰 질문 내용과 생산·수출량 연계도



3 특정 수출건 확인



미국 세관 검증팀은 최근 수출건에 대한 1~2건의 인보이스를 검증 대상으로 제시하고, 제3국 물품의 우회수출 가능성 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원산지 입증서류 구비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함

확인 절차

- 특정 수출건에 대한 확인은 최근 수출된 물품의 인보이스를 제시하고, 수출 거래 사실, 실제 생산 여부, 원재료 구매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됨



- 답변내용은 이전단계에서 파악한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확인시 답변내용과 비교하여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이후 실시되는 공장 확인과도 연계됨
- 조사 대상이 되는 특정 수출건에 대해 각 질문별로 요구되는 증빙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및 입증서류는 원재료 구매 ▶ 생산 ▶ 선적 ▶ 수출까지의 자료가 상호 연계가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확인하게 됨

유의사항

가. 사실에 근거한 일관성 있는 답변과 근거자료 제시

- 검증팀은 업체가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는지를 염두에 두고 질문하므로 검증대상 수출건에 대한 답변이 이전 단계의 답변 내용과 다르면 원산지 확인 불가 또는 입증자료 불충분 결정이 내려 질 수 있음
- 입증자료는 단계(원재료 구매 ▶ 생산 ▶ 수출)별로 순차적으로 상호 연계되어야 하며, 서류 간에 일치되어야 함

나. 적극적으로 원산지 소명 및 보관서류 제시

- 원산지 입증자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할 경우 폭넓게 인정되므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를 적극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예) 원재료 구매 사실 및 대금결제 증빙에 대해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업체간 거래명세서, 입출금 통장사본 등도 인정되었음
- 방문조사 당일에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자료 준비, 영문 번역 등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방문조사 현장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고 제출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조사 현장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제출 가능한 기한을 검증팀에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인터뷰 내용 및 답변 가이드

가. 수출 거래 사실 확인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인보이스를 제시 ²⁾ 하며 귀사가 발행한 것이 맞나요?	▽ P/O(Purchase Order), 인보이스, 수출신고서, 수출대금 영수 자료	·업체의 검증대상 물품 실제 수출 사실 확인
미국 내 구매자는 누구인가요?		
수출에 에이전트가 관계되어 있습니까?(목록 포함)		
판매가격의 기준은 무엇인가요?(FOB, CIF 등)		

답변 가이드

- 미국 내 구매자가 수입한 물품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물품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제3국산 물품의 우회수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질문이므로 미국 내 바이어, 수출관련 에이전트 등 수출거래에 관계된 회사를 누락 없이 모두 알려 주고 목록을 제시
- 미국 세관 검증팀은 수출사실 확인을 위해서 수출대금을 영수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하며, 특정한 서류를 한정하여 요구하지 않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자료이면 폭넓게 인정

2) 인보이스를 제시하는 시점은 업체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공장 확인 전에 제시되고, 공장 확인 시간동안 요구 자료를 준비하도록 함

- 수출대금 영수관련 인정 서류 예시
외국환거래계산서, 수출대금 입금 통지서, 외환/금 거래계산서(외국판매매 영수증), 외화타발 송금지급 계산서, 통장 등
- 수출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생산시설 및 현황 확인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V 생산일지 V ERP자료	· 검증대상 물품 실제 생산 사실 및 충분 가공 여부 확인
어떤 공정을 수행합니까?		
금일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주당 작업일수는 며칠입니까?		
초과근무는 하나요?	V 외주가공 수행 및 가공비 결제 증빙자료	· 각 공정별 업체의 수행공정 및 사업장 등을 확인하여 국내 생산가능 여부 확인 · 실제 생산 주체 확인을 통해 생산 여부 확인 · 역내에서 중단 없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확인
생산시설 미보유시 각 외주공정 [ex. 제직·편직, 염색, 날염, 재단, 봉제, 마무리, 포장 등]을 수행하는 업체와 제조공정을 설명해 주십시오.(목록 포함)		

답변 가이드

- 검증대상이 되는 수출물품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었는지 여부, 역내에서 중단 없이 생산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임
- 생산공정과 관련하여 일일근무인원, 주당 작업일수, 주당 초과근무시간 등을 답변할 때에는 먼저 사실 관계와 연례 기업정보 입력사항(P.20 참고 내용 중 ④ 근로자 수 및 업무 ⑤ 생산제품에 대한 설명 및 생산능력 ⑥ 보유설비 현황 ⑦ 주당 설비가동시간)을 고려해야 함
- 검증팀이 방문한 장소에 생산시설이 함께 있고 직접 생산을 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각 공정에 대한 설명이 추후 진행되는 공장 확인과 연계되므로 답변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 직접 생산도 하지만 외주가공업체도 두는 경우 또는 여러 업체가 생산공정을 각각 맡아 진행하고 그 프로세스만 관리하는 무역업체의 경우는

- P/O나 인보이스 별로 생산공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각 생산공정을 수행하는 업체와의 거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함

- 중요한 생산과정 즉,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공정(예를 들어 양말인 경우 편직공정 등)을 수행한 사실여부를 서류를 통해 확인함
- 외주공정 수행 관련 인정 서류 예시
발주서, 작업지시서, 정산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청구서, 출고송장, 판매거래처 원장, 내국 신용장, 포장명세서 등
- 생산관련 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다. 원재료 구매 사실 확인(주로, 원사 및 원단에 대상)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수출물품의 제조에 투입되는 원재료는 무엇인가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 구입 및 대금결제 증빙자료 ∨ 공급자 목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 원재료의 품명, 규격, 소요량 등 확인 · 소요 원재료의 자체생산/구매 여부 · 역외산 원재료의 투입여부 확인
원재료 중에서 구매하는 원재료는 무엇인가요?		
원재료 공급자는 누구입니까?(목록 포함)		

답변 가이드

- 수출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업체에서 구입하는 원재료의 품명, 규격, 소요량 등이 적정한지 여부, 원재료가 역내산인지 역외산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원사 및 원단에 대해 서만 소명하면 되고, 부자재, 포장재 등은 소명할 필요 없음
- 원재료가 역내산이 아닐 경우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 투입 원재료 및 구매내역 답변내용과 이후 공장 확인시 현장의 원재료 재고 등을 비교하게 됨
- 원재료 구매 확인을 위해서 대금 지급 증빙자료를 반드시 확인하며, 증빙자료는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송금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검증 당일 현장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 모두 폭넓게 인정

- 원재료 구매 관련 증빙서류 인정 예시

- 수입원재료의 경우 : 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등
- 국내구입원재료의 경우 : 발주서, 거래명세서, 거래처 원장, 원재료 수불부, 인수증, 납품 명세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구매확인서, 내국신용장, 송금확인서, 통장사본, 회계전표, 무역어음대출 등

라.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질문 내용	확인 자료	검증 포인트
제품/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 했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포괄)확인서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 제품/재료가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답변 가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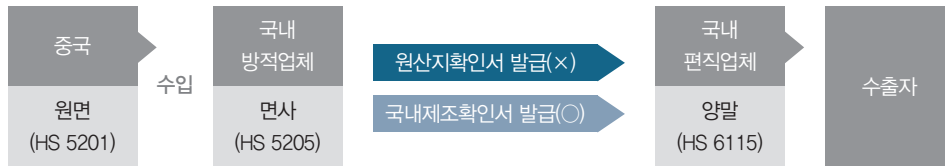
-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등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검증대상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입증자료이므로 원사 및 직물의 생산 및 원산지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야함
-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시점에 수출물품에 투입된 원재료를 공급하는 업체가 제공한 원재료가 원산지 지위를 획득했는지에 대한 인지 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소급 발급된 원산지 확인서류도 인정함
- 검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급 발급된 원산지 확인서류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정성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국내제조원산지(포괄)확인서 등의 적정성이 담보되어야 함
- 이번 검증기간 동안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한 원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검증을 확대하지 않았으나, 면사, 탄성사 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치면서 역외산 수입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향후 생산자에 대한 현지검증이 예상됨

참고 ▶ 원산지확인서 VS 국내제조확인서

비교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의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제품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 증명 서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제품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해당 재료의 국내 제조 사실 증명 서류
증명내용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증명	공정 수행 여부 증명
근거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3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4

사용예시



-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르면 면사(HS 5205)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류 변경)이므로 중국산 원면(HS 5201)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방직한 면사는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없음
 - 원산지(포괄)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고, 국내에서 방직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발급은 가능

참고 ▶ 미국 세관의 섬유류 검증 질의서 상 질문내용

가. 수출 거래 사실 확인

Export documentation :

수출서류

List customers in the U.S. :

미국 내 고객 목록

Is a selling agent or trading company used? If so, please provide list.

판매대리인 혹은 무역회사가 동원됩니까? 만일 그렇다면, 목록을 제출하십시오.

Price basis for sales (FOB, CIF, CMT³⁾) _____

판매가격의 기준(FOB, CIF, CMT)

From whom do you receive your orders?

귀사는 누구로부터 주문을 받으십니까?

나. 생산 시설 및 현황 확인

Date of Cutting :

원단 재단일자

Daily? _____ Was a subcontractor used?

매일

협력업체가 동원되었는가?

Date of Sewing

봉제일자

Daily? _____ Was a subcontractor used? Is the MID correct?

매일

협력업체가 동원되었는가? MID가 정확히 맞는가?

Please provide the number of all employees working today, including the areas in which they are working, i. e., cutting, sewing, packing, etc.)

금일 근무 중인 전체 직원 수를 알려주십시오. 각 작업 분야별(예. 재단, 봉제, 포장, 기타) 포함

Hours in Shift :

교대 시간

Shifts per day :

일일 교대 횟수

Work days per week :

주당 작업일수

Overtime hours per week :

주당 초과근무 시간

3) CMT는 Cutting, Making and Trimming 약자로 본사에서 디자인과 원단을 모두 공급하고 협력업체는 공급받은 자재를 '재단해서 봉제하고 마무리' 하는 공임조건

다. 원재료의 구매 사실 확인

What materials are purchased (yarn, thread, fabric, accessories)

구매하는 원재료는 무엇입니까? (원사, 재봉사, 원단, 부속품)

Fabrics/Components paid for by

원단/구성요소의 대금결제 주체

Country(countries) from which fabric/components are supplied

원단/구성요소의 공급국가(들)

Please provide a list of the names, addresses and countries of origin for all materials suppliers.

모든 원재료 공급자의 업체명 및 주소, 원산지의 목록을 제출하십시오.

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Affidavits for raw materials available?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류가 있는가?

Origin of yarn (if yarn forward) :

원사의 원산지 (Yarn Forward의 경우)

Names and addresses of yarn and fabric producers :

원사 및 원단 생산자의 업체명과 주소

Origin of fabric (if fabric forward) :

원단의 원산지 (Fabric forward의 경우)

Names and addresses of fabric producers :

원단 생산자의 업체명과 주소

Country of cutting (if cut and sew requirement) :

재단 국가 (재단과 봉제가 필요한 경우)

Names and addresses of cutters :

재단업체의 업체명과 주소

4 공장 확인



현지검증의 가장 핵심적인 절차로 실제 생산공정을 수행하는지 여부와 역외산 원재료가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증거 또는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확인 절차

- 방문조사의 마지막 단계인 공장 확인은 업체 책임자의 안내로 검증팀이 실제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수출물품의 생산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인터뷰하는 방법으로 진행됨
* 공장 확인이 진행되는 동안 업체는 전반적 생산·거래 실태 확인시 검증팀이 요청한 증빙자료가 종료시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앞서 진행된 조사에서 업체가 답변한 내용과의 일치 여부 및 이후 제시되는 증빙자료와의 일관성 있는 연계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업체에서 답변한 생산량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원재료(사 또는 식물)의 포장박스가 제3국으로 표시되어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
- 무엇보다 미국 세관 검증팀에서는 현지검증 최종목표가 “실제 현장 확인”에 있는 만큼, 역외산 재료 또는 역외산 완제품을 보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불충족 및 제3국 물품 우회수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함

유의사항

가. 역내산과 역외산 원재료 엄격한 구분관리

- 모든 공정에서 역내산 원재료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수출품 생산라인 외의 다른 생산라인에서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한다면, 역외산 원재료가 對美 수출물품에는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공장 확인에서 증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재료를 구분해서 관리해야 함

- 역내산 원재료를 역외산 원재료 상자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검증팀으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경우에는 사실을 바탕으로 타당성있는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함

나. 공장시설에 대한 사진촬영 동의 여부

- 사진 촬영이 필요한 경우 검증팀은 일반적으로 사전에 업체의 동의를 받아 사진 촬영을 하게 되지만, 만약 특정 생산시설 또는 특정 구역이 보안상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경우에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 불법행위 관여 여부(지적재산권 위반 등) 조사

- 미국 검증팀은 현지검증시 검증대상 업체가 섬유 또는 의류상품의 무역에 관해 불법행위에 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므로 지적재산권 등 원산지와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해서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도 대비해야 함

확인 내용 및 대응 가이드

가. 원재료 보관구역

질문 내용	검증 포인트	대응 방안
현재 보관중인 원재료의 수량	·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가 충분한지를 파악하여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는지 여부를 확인	▽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동 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음을 소명
현재 보관중인 원단 및 부속품의 종류와 원산지		
미국 또는 역내산 원단의 비율	· 각 원재료 및 원단이 원산지 재료인지 여부를 확인	▽ 원재료를 원산지별로 구분관리 하고 있으며, 미국 수출품에 대하여 역내산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음을 소명
비 원산지 원단의 비율		

대응 가이드

- 원재료 보관 구역에 충분한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 제품별로 투입되는 원재료의 종류와 원산지를 설명하여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있음을 소명
- 일시적으로 원재료가 소진되었거나, 생산 직전에 원재료를 공급받아 바로 투입하는 경우에는 원재료 수불부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수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음을 소명
- 원재료 보관 장소에 비원산지 재료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가 투입되어도 원산지 기준이 충족함을 소명하거나, 해당 비원산지 재료는 국내 공급물품 제조에만 투입되고, 원산지 재료와 구분 관리 되고 있음을 적극 소명하여야 함
 - ※ 원재료 창고에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를 함께 보관하는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별도의 구역에 보관하고, 별도로 표지판을 부착하여 혼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 검증 업체 중 일부 업체는 비원산지 재료를 공급받았던 종이 상자에 원산지 재료를 담아 보관하고 있어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은 경우가 있으므로 종이 상자를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오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

미국세관이 과테말라 공장에서 적발한 역외산 사(絲)



나. 생산 구역

질문 내용	검증 포인트	대응 방안
재단 작업대(Cutting tables) 총 수 및 금일 사용 중인 숫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각종 기계류가 충분한지 여부를 파악하여 실제 수출품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동 설비를 사용하여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음을 소명
재단 기계(Knives/Cutting Machines) 총 수 및 금일 사용 중인 숫자		
봉제기계(Sewing Machines) 총 수 및 금일 사용 중인 숫자		
특화기계(specialty Machines) 총 수 및 금일 사용 중인 숫자		
굴대(Spindles) 총 수 및 금일 사용 중인 숫자		
편직기(Knitting Machines) 총 수 및 금일 사용 중인 숫자		

대응 가이드

-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각종 기계 및 설비류를 수출품 종류별로 구분하여 소명함으로써 수출품을 직접 생산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
- 생산과정 중 일부를 외주 가공하는 경우에는 외주 가공하는 공정내역 및 외주 가공업체 명칭 및 위치를 정확히 알려 주고 필요한 경우 검증팀이 외주가공업체를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주선
- 생산과정에 비원산지 재료 또는 원산지 미상의 재료가 투입되거나 혼용되지 않음을 적극 설명하고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 재료를 엄격히 구분하거나 재고 관리기법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

다. 봉제·결합 구역

질문 내용	검증 포인트	대응 방안
생산 라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라인 숫자 및 기계류의 숫자를 파악하여 수출품을 실제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품 생산에 사용되는 설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동 설비를 사용하여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음을 소명
각 생산라인의 기계 수		
사용 중인 기계의 수		

대응 가이드

- 생산라인 현황 및 기계류의 숫자와 종류를 설명하여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음을 적극 소명
- 수출품에 재단·봉제(결합) 등의 가공공정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작업현장 및 설비류를 확인하게 하여, 수출품이 가공공정 기준을 충족함을 적극 소명

라. 마무리 공정 및 제품 포장 구역

질문 내용	검증 포인트	대응 방안
마무리 공정에서 수행되고 있는 작업의 종류	· 마무리 공정 또는 포장 중인 제품의 작업 내용과 구매자를 파악함으로써, 검증받는 업체가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임	√ 수출품을 실제 생산하여 마무리 공정과 포장 작업을 거쳐 실제 수출하고 있음을 소명
마무리 공정에서 생산된 물품이 누구에게 수출(판매)되는 물품인지 여부		
주문받은 제품을 포장 중인 제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물품의 주문자가 누구인지		
인도할 준비가 된 완제품의 수량		

대응 가이드

- 수출품의 실제 마무리 공정 및 포장 공정을 검증팀에 보여 줌으로서 수출품을 직접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줌
- 특히, 검증팀은 제3국산 물품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우회수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므로, 제품 포장구역에서는 국내 생산라인에서 생산된 물품만 포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음

5 추가 소명



- 방문조사시 현장에서 제시하지 못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자료의 범위와 제출기간을 명확하게 한 후 허용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입국에서는 특혜 관세를 배제할 수 있음

추가제출 자료 예시

구분		실제 제출된 자료 명칭
원재료 구매	거래사실	거래명세서(전자), 매도확약서, 판매거래처 원장, 자재발주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인수증, 납품 명세서, 월별 운임현황, 비축발주의뢰, 거래명세표(출고증), 거래명세표(인수증)
	대금증빙	외환거래계산서(거래종류 : 내국신용장 결제, 무역어음대출), 전자 영세율 세금계산서, 관리항목별 원장, 회계전표, 매도확약서(Offer sheet), 취소불능 내국신용장
생산 사실	시설증빙	공장 Profile(사진포함), 사업자등록증, MID 정보 등록 내역, 공정설명도, 제조설명도, 연도별 출근현황, Attendance Table, Time Record
	현장내역	ERP 자료(원재료 입고고 현황, 월별/일별 생산실적, 생산의뢰 및 실적 조회, 출하의뢰 및 실적조회), 작업일보, 생산관리보고서, 생산일지, Work Daily record(Dyeing / Production / Finishing)
	외주관계	발주의뢰서, 작업의뢰서, 원사소요내역서, 작업지시서, 발주서
	대금증빙	타행환송금명세 내역서, 통장사본, 월별 정산서, 은행 확인증
수출거래	거래사실	Purchase order sheet(수입자의 구매주문서), Audit Form(선전 전 검사결과 보고서), 수출대행계약서, 수출신고서, Sales Contract, 선하증권
	대금증빙	외국환거래계산서, 수출대금 입금 통지서, 외환/금 거래계산서(외국환매매 영수증), 외환타발 송금지급 계산서
원산지 확인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원산지증명서



유의사항

가. 검증팀이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 목록과 제출 기한을 재확인할 것

- 현지검증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검증팀에서 추가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업체에서는 검증팀에게 자료의 범위와 제출 기한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명확하게 해야 함
 - 현장 구두 요구의 특성상 요구 범위에 대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요청 서류와 제출된 서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검증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반드시 재확인해야 함
- 자료 제출은 미국 세관 검증팀이 출국하기 전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어려운 경우 현지검증 종료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한국 세관을 통하여 제출 가능

나. 미국 세관측이 확인 용이한 자료의 형태로 제출

- 검증팀 요구에 부합하게 구분하여 제출
 - 구매내역서, 거래대금 증빙, 거래명세서 등은 해당 업체별로 묶어서 정리하는 등 생산공정 단계별, 거래 업체별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준비함
- 자료를 영문으로 새로이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한글 자료를 바탕으로 영문 번역본을 첨부하거나, 영문 설명을 더하여 제출하면 됨
- 모든 서류에 영문 참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목차라도 최소한 영문으로 준비하여 요구된 자료 일체가 준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현장에서 수기로 작성한 생산현황 등의 경우에는 영문 설명이 없으면 미국 세관 검증팀에서는 참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다. 수탁가공 업체가 검증을 받는 경우

- 수출자가 아닌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검증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공장 확인을 통해 실제 생산 여부 확인은 용이
- 그러나, 원재료 구매 및 출처에 대한 입증, 생산된 물품이 실제 수출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은 한계가 있음
- 추가자료 제출기간 동안 수출자에게 현지검증 사실을 통보하여 생산자가 입증하지 못한 사실을 수출자가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협조해야 함

4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기업체 현지검증 대응 사례

기업체 대응사례(A섬유)

1 기업체 대응사례(A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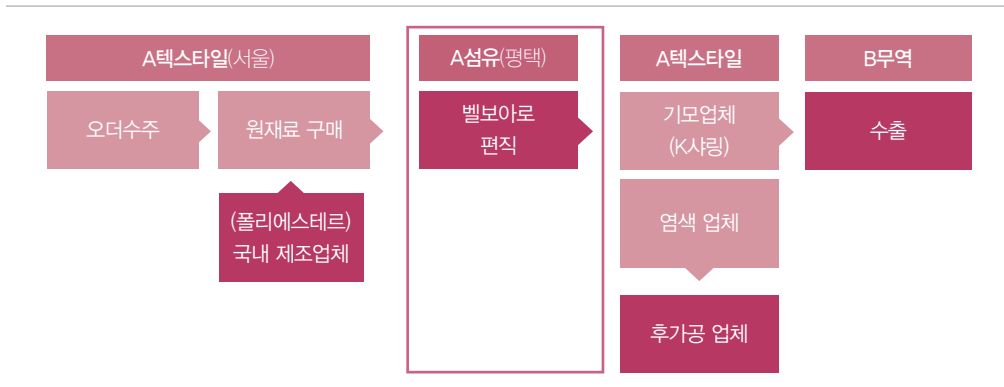


이 사례는 '14년 6월 실시된 섬유류 현지검증시 경기도 평택에 소재하는 중간 가공 업체(편직물 생산업체)의 실제 대응 사례이며, 방문조사 시 공장 확인까지 진행하여 생산 현황 및 실제 생산라인도 확인한 사례임

검증 대상기업 선정

- 한-미 검증팀은 검증 전일에 다음 날 방문할 업체를 선정
- 미국 세관 선정 사유는 FTA 적용물량 증가

수출물품 제조 흐름도



- ① A텍스타일(서울 소재)이 오더 수주 및 원재료 구매 · 공급
- ② A섬유(평택공장)가 편직
- ③ 추가 가공(기모 업체 → 염색 업체 → 후가공 업체)
- ④ B무역상사가 수출



조사 단계별 확인절차

가. 방문조사 통지

- 한-미 양측 대표 각 1명 및 통역 등 3명이 먼저 회사 안으로 들어가 한-미 FTA에 따른 현지 검증을 왔음을 통지하고, 원산지검증 관련 책임자(동사의 경우 공장장)에게 방문목적, 방문조사 거부시 특혜배제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 후 검증팀 인원수를 알려주고 방문조사를 받을지 의사 타진

* 방문조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협정 제4.3조 6항 및 10항에 따라 특혜배제 대상이 됨

나. 방문조사 동의 및 조사 착수

- 방문조사에 동의함에 따라 양측 검증팀원이 모두 회사 내로 들어가서 회사 측에서 마련한 회의실에서 조사 착수
- 서울세관 검증팀이 한국어로 설명하거나 질문하는 내용은 한국 통역관이 영어로 통역하고, 공장장이 한국어로 대답하면 한국 통역관이 영어로 통역
- 미국 세관 검증팀이 영어로 질문하면 미국 통역관이 한국어로 통역하고, 공장장이 답변하면 미국 통역관이 영어로 통역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시간	조사 내용
10:10 ~ 10:20	조사 시작 : 조사배경 및 법적근거 안내 (회사관계자 및 양측 검증팀 착석)
	검증팀장 먼저, 사전 연락 없이 귀사를 방문하여 원산지조사를 수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팀원 (원산지 현지조사 통지서 및 동의서를 공장장에게 보여줌)

검증팀장

이번 원산지조사(방문 조사)는 미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 세관직원들이 공동으로 수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한-미 FTA 제4장, FTA특례법 제13조·동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근거하고 있으며, 원산지조사 사실을 방문과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원

(납세자권리현장,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위임장을 공장장에게 보여줌)

원산지조사(현지검증)는 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행되며, FTA특례법 제13조제9항,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원산지조사에 변호사, 관세사를 참관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원산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조사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사가 수출한 제품에 대해 미국 세관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어 미국의 수입자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하며, 향후에도 수출할 제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FTA특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1천만원 미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귀사는 원산지 방문조사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공장장

예, 동의합니다.

검증팀장

미국 세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 세관 수입전문가인 K씨, 미국 세관 국제무역전문가 D씨, ICE 조사관인 B씨, 통역인 ○○○씨입니다.

한국세관 직원, 통역, 저는 팀장인 ○○○입니다.

시간	조사 내용
	<p>원산지조사 순서는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인터뷰가 실시되고, 보관장소, 생산공정, 마무리공정 및 포장공정을 확인하고자 공장 확인이 실시되며, 마지막으로 역내산과 역외산이 구분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나의 송장을 선정하여 원재료의 투입부터 수출까지의 기록을 서면으로 확인하게 됩니다.</p> <p>원산지 조사 결과는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FTA특례법 제1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p> <p>방문조사는 최소 2~3시간 소요가 예상되는데, 짧은 시간 내에 원산지가 세탁되지 않았고, 한국산 상품임이 기록 관리되고 있음이 입증될 수 있도록 회사 임직원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또한, 요구받은 서류를 즉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없는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고 제출이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한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p>
<p>10:20 ~ 10:30</p>	<p>조사동의서 서명 및 납세자권리현장 등 교부</p> <p>검증팀원 조금 전 공장장님께서는 회사를 대표하여 방문검증에 동의하였습니다. 전달해드린 조사통지서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p> <p>공장장 (조사통지서 작성 및 서명)</p> <p>검증팀원 (납세자권리현장과 수령증 전달)</p> <p>공장장 (납세자권리현장 수령증 서명)</p>

시간

조사 내용

검증팀원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및 위임장 서식 전달)

공장장

(안내문 및 위임장 수령)

다. 전반적 생산·거래 형태 인터뷰

시간

조사 내용

10:30
~
10:40

문 : 검증팀장, 답 : 공장장

문 귀사의 공장(생산시설) 상호 및 주소는 공장장님의 명함에 있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까?

답 예, 명함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문 귀사의 설립일자는 언제입니까?

답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보며) 당사 설립일은 ○○년 ○○월입니다.

문 귀사의 생산물품은 편물입니까, 직물입니까?

답 당사는 침구류용 편물, 포장재 등 산업용 편물 및 의류용 벨벳 또는 벨보아 편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모두 편물에 해당됩니다.

문 귀사의 월간 또는 연간 생산량은 얼마나 됩니까?

답 연간 약 ○○만 야드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문 귀사의 미국 수출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답 당사 생산량 중 對美 수출비중은 약 ○○% 수준입니다.

문 미국 이외에 다른 국가로의 수출비율을 어느 정도 됩니까?

답 당사 전체 생산량의 약 ○○%가 터키, 카자흐스탄, 동남아 등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시간	조사 내용
	<p>문 귀사의 소유주는 누구이며,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답 당사 소유주는 XXX 대표이며, 서울 A텍스타일 본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p>
	<p>문 귀사의 관계회사 및 소재지는 어디 입니까? 답 당사 소유주 XXX 대표는 서울에 A섬유 본사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장소에 별도 법인인 A텍스타일도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 평택은 A섬유의 평택 생산 공장입니다. 대표님의 아들 XXX이 경기도에서 A화섬을 운영하고 있으나, A화섬은 환편물만 생산하고 있어 본건 수출물품과는 무관합니다.</p>
	<p>문 귀사는 수출품 생산에 협력업체를 동원합니까? 답 예, 당사는 서울 소재 A텍스타일을 통하여 C화섬과 D사에서 polyester絲를 구입하여 벨보아 편물로 편직하여 본사의 지시에 따라 후가공업체인 K샤링으로 출고하고, K샤링이 후가공 한 후 B무역을 통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p>

라. 특정 수출건에 대한 인터뷰

시간	조사 내용
10:40 ~ 11:10	<p>문 (미국 수입시 제출된 '14.○○.○○'자 인보이스를 보여주며) 귀사가 B무역 상사를 통하여 수출한 '14.○○.○○'자 인보이스건 중 구매주문번호(P.O. No.) 1234번 건은 귀사가 편직한 물품입니까? 답 예, 당사가 편직하여 B무역상사를 통하여 수출한 건입니다.</p>
	<p>문 귀사의 미국 내 주요 고객(Buyer)은 어떤 회사들입니까? 답 캘리포니아 소재 △△사가 주요 고객입니다.</p>
	<p>문 귀사의 수출에는 판매대리인 또는 무역회사가 동원됩니까? 답 B무역상사(서울 소재), S상사(의정부 소재), F트레이딩(의정부 소재) 및 G사(서울 소재)를 통하여 수출하고 있으며, 동 수출건의 경우 B무역상사를 통하여 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p>

문 귀사는 B무역상사로 수출품을 공급한 증빙 서류와 대금을 지급받은 증빙서류 및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답 요청하신 서류는 서울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요청하여 공장 확인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구매하는 원재료는 무엇이며, 어느 나라로부터 공급받고 있습니까?

답 당사는 전량 국내 C화섬(한국), D사(한국) 및 T사(한국)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동 수출건은 C화섬과 D사에서 공급받은 원사를 사용하여 편직하였습니다.

문 그 원재료의 대금결제 주체는 누구입니까?

답 서울 본사인 A텍스타일에서 구매하고 대금도 결제하고 있습니다.

문 귀사는 원재료 구매 증빙서류와 대금지급 증빙서류 및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답 요청하신 서류는 서울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요청하여 공장 확인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귀사의 상품이 공장에서 출고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절차를 설명하고, 관련된 운송업체와 관세사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벨벳과 벨보아 직물은 일반 상품이므로 당사는 수출 주문과 관계없이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당사는 생산된 직물을 본사의 지시에 따라 본사에서 보내온 운송업체를 통하여 K샤링으로 출고하고 있으며, K샤링이 염색 등 후가공한 후 B무역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B무역은 Y관세법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귀사는 누구로부터 생산 주문을 받으니까?

답 서울 본사가 B무역으로부터 수출 주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귀사는 B무역상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답 요청하신 서류는 서울 본사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본사에 요청하여 공장 확인 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조사 내용
	<p>문 직원들이 근무하는 작업분야와 금일 근무 중인 직원 수는 몇 명입니까?</p> <p>답 당사의 주요 공정은 편직공정이며, 예년에 비해 생산량이 〇〇% 감소하여 현재 〇〇명이 편직공정에 투입되고 있습니다.</p> <p>문 교대근무시간, 일별 근무조 편성, 주당 작업일수 및 초과근무 시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p> <p>답 하루 8시간씩 〇〇명이 주6일간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는 생산량이 감소하여 초과근무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p> <p>문 귀사가 생산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는 무엇입니까?</p> <p>답 제품별 일일 생산현황자료와 일별 제품 출고대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생산현황 대장과 제품 출고대장을 보여 줌)</p>

마. 공장 확인 및 강평

시간	조사 내용
11:10 ~ 11:50	<p>공장·창고 확인 (공장장의 안내로 생산라인 및 원재료, 제품보관 창고 확인 시작)</p> <p>제품 생산용 편직기 확인</p> <p>문 (미국 세관 검증팀) 귀사의 편직기는 몇 대입니까?</p> <p>답 〇〇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p> <p>생산공정에 투입되는 원사 확인 (투입되는 원사가 국내 C화섬 및 D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상표 및 생산자명이 확인되었음)</p> <p>원재료 보관창고 확인 (보관되어 있는 원재료가 모두 국내 C화섬 및 D에서 공급받은 원재료로 확인되었음)</p>

제품 보관창고 확인

(동 공장에서 생산된 편물제품들을 확인할 수 있었음)

11:50

~

12:00

강평 및 마무리

문 (검증팀) 요청한 서류들은 준비가 되었습니까?

답 서울 본사에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 회신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잠시 후)

서울 본사에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 (검증팀) <한-미 양측 검증팀은 한국 검증팀이 자료를 제출받아 미국

검증팀에게 전달하기로 합의 함>

그럼 준비가 되는대로 서울세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에 향후 절차 및 일정을 알려주고 검증 종료

5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검증대응 8대 핵심포인트

- 평소 철저한 원산지관리를 통해 검증 대비
-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는 필수
- MID 및 연례 기업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 미국 세관의 서면검증 시 대응 철저
- 검증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 제한된 시간 내에 원산지 상품임을 적극 입증
- 생산·거래 형태별 대책
- 현지검증을 對美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

1 평소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통해 검증 대비



섬유류에 대해서는 미국 세관의 지속적인 현지검증이 예상되므로 짧은 현지검증 시간 내에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평소 현지검증을 염두에 둔 철저한 원산지 관리가 가장 중요함

미국 세관, 지속적인 현지검증 예상

- 미국은 14개 협정, 20개 국가와 FTA를 발효 중에 있고,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를 제외하면 우리나라와의 무역비중이 가장 큼
- NAFTA 발효 이후 미국 세관은 FTA 특혜가 큰 산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검증을 실시하고 있고, 초기에는 캐나다, 멕시코 등을 수차례 방문하여 현지검증을 하였으며, 특히 섬유류 및 자동차의 경우 지속적으로 해외 현지검증을 실시하고 있음
- 미국은 우리나라의 對美 수출 섬유류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현지검증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출업체에서는 평소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통해 검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미국 세관의 현지검증 포인트에 맞추어 대비

- 미 CBP의 현지검증 주요 포인트
 - 첫째, 제3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원산지 세탁
 - 둘째, 실제 한국에서 생산된 물품인지 여부
 - 셋째,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넷째, 원재료부터 수출까지 입증자료가 상호 연결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직접 생산시설이 있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임



- 따라서, 수출업체에서는 수출건별로 원재료 구매에서 생산·수출까지의 단계별 증빙자료를 상호 연계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지검증 포인트에 맞추어 거래관계, 설비현황, 생산공정 및 생산량 등의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준비해야 함

예고 없는 방문조사에 대비

-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에서는 수출자·생산자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고 업체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반면, 한-미 FTA의 섬유류 원산지 검증은 사전통보 없이 불시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므로 평소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통하여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방문조사에 대비하여야 함

2 증빙서류의 유지 관리는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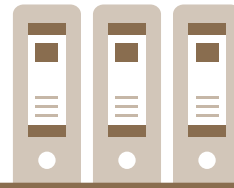
한-미 FTA 제6.17조(기록유지요건)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입증 자료를 그 증명이 발급된 날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현지검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P/O 단위 또는 인보이스 단위별로 자료를 관리하고, 특히 생산일지 등 생산관련 입증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한-미 FTA에 따른 기록유지 요건

-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 입증자료 보관과 관련하여 원재료 구매 ⇒ 수출품 생산 ⇒ 수출거래 관련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지검증 시에도 원재료 구매부터 물품 생산·수출까지의 관련 기록이 상호 연계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함
 - 원재료 구매 관련 기록 : 원재료(간접재료 포함) 구매 입증서류, 가격·원가 관련 자료 및 구입대금 지급 증빙서류
 - 수출품 생산 관련 기록 : 생산일지, 원재료·제품 수불부 및 반출입 자료
 - 수출거래 관련 기록 : 수출품 거래 입증서류, 가격·원가 관련 자료 및 대금 영수 증빙서류

수출 인보이스 또는 P/O 단위로 자료관리

- 미국 세관은 현지검증에서 특정 수출 건에 대한 원산지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해당 원재료가 해당 수출품 제조에 사용된 재료인지, 생산일지 등 생산관련 자료를 통하여 해당 수출품이 당해 공장에서 생산되었는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들 서류가 미국으로 수입된 특정 수출 건의 거래와 일관되게 연결되는지를 확인
- 따라서, 수출자(생산자)는 인보이스 또는 P/O 단위로 구분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관리하면 현지검증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



생산관련 입증 자료를 한 번 더 확인

- 원재료 구매나 수출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잘 보관하고 있는 반면, 생산관련 자료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생각하여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수출업체는 생산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수출건과 어떻게 연계하여 소명할 것인지에 대하여 한 번 더 확인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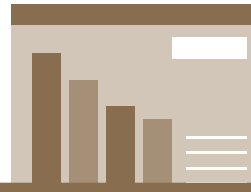
3 MID 및 연례 기업정보를 정확하게 제공



미국 세관은 MID 정보와 섬유류 연례 기업정보를 분석하여, 실제 생산시설이 없거나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업체를 선정하여 현지검증을 실시하므로, 실제 생산자를 MID 정보로 제공하고, 정확한 연례 기업정보를 제공하면 불필요한 검증을 예방할 수 있음

MID 정보 기재 유의사항

- MID 정보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공정을 수행한 생산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후가공 공정이나 포장 공정 등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을 수행한 업체나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무역회사 등을 MID 정보로 제공해서는 안됨
※ 제6115.10호의 양말류의 경우 편직(knitting)공정을 수행하는 생산자를 MID 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출자나 무역회사를 MID 정보로 제공하면 현지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 수출자는 MID 정보를 인보이스, 포장명세서 등 무역 서식에 명기해서 전달하여, 1건의 인보이스에 여러 생산자가 생산한 물품이 함께 수출된다면 MID 정보로 각각의 생산자를 모두 기재하여야 함
- 정확한 MID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출 시마다 다른 MID 정보를 제공하면 통관이 지연되거나 현지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



연례 기업정보 정확성 확인

- 섬유산업연합회의 「생산자섬유생산정보시스템」에 연례 기업정보를 등록하였다면 그 내용이 정확한지, 등록된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등을 확인
- 생산능력, 보유설비 현황 등 주요 항목의 소명 자료를 준비하고, 수출품 또는 원재료를 공급하는 국내 생산자도 상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매년 자사의 연례 기업정보 입력사항을 확인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수정하고, 협력업체 정보도 매년 갱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4 미국 세관의 서면검증 시 대응 철저



미국 수입자를 통해서 미국 세관으로부터 정보제공요청서(CBP Form 28)를 받은 경우, 입증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여 현지검증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

미국 세관의 정보제공요청에 적극 대응

- 미국 세관은 수입통관 단계에서 의심이 있는 경우, 미국 내 수입자에게 CBP Form 28(정보제공 요청서)을 송부하여 원산지 입증관련 자료를 요청하며, 수입자는 한국의 수출자에게 미국 세관이 요청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단계에서 우리나라 수출자가 원산지 입증자료를 충분하게 제출하면 미국 세관은 긍정적인 결과를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하지만, 수출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 세관은 우리나라 수출자를 현지검증 대상 업체로 선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입자로부터 미국 세관의 정보제공요청서를 전달받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원산지 입증서류를 제공(수입자에게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은 미국세관에 직접 제출도 가능)하여 미국 세관의 긍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함

정보제공 불충분으로 현지검증을 받은 사례

- 우리나라 수출자가 미국 내 수입자를 통해 미국 세관의 정보제공요청서를 전달 받아 한글로 작성한 원재료 구매 증빙서류 및 제조공정도 등의 자료를 수입자에게 송부하였음
- 생산일지 등의 자료가 모두 수기로 작성된 한글 문서였으므로 미국 세관이 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그 결과, 미국 세관은 우리나라 해당 수출자가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현지검증 대상업체로 선정하였음

5 검증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서, 수출자의 확인 없이 수입자가 임의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로 인한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단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함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FTA 특혜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음

- 한-미 FTA에서는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미국은 원산지증명서가 없어도 FTA 특혜신청이 가능함
- 현지검증 대상업체 중 △△사는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나, 현지검증 대상으로 선정되었고, 확인 결과 미국 내 수입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음에도 수입신고 시 FTA 특혜를 신청하였음

검증결과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원산지 리스크 최소화

- 미국 내 수입자가 우리나라 수출자가 발행한 C/O 없이 특혜관세를 신청한 경우에는 현지 검증 결과에 따른 책임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음
- 수출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원산지증명서 발행여부 및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은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자는 책임이 없다는 점 등을 계약단계부터 명확하게 해 둘 필요가 있음

6 제한된 시간 내에 원산지 상품임을 적극 입증



한-미 합동 현지검증은 하루에 2~3개 업체, 업체당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내에 실시되므로 수출자는 짧은 시간 내에 적극적으로 원산지를 입증하여야 함

현장에서 소명하는 것이 최선

- 한-미 FTA에 따른 현지검증은 방문 업체당 2~4시간 정도가 소요됨
- 짧은 시간 내에 “이상 없음”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의 의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답변하고 입증서류를 제시함으로써, 검증대상물품이 원산지 상품이고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함

평소 현지검증 인터뷰 대비

- 효과적으로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누가 인터뷰를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요건이므로 사전에 담당자를 선정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인터뷰는 수출거래 및 생산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관리자가 응하고, 생산·수출·원산지관리를 담당하는 분야별 실무자가 배석하여 답변하는 연습을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7 생산·거래 형태별 대책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현지검증 시 미국 세관이 검증대상으로 제시하는 서류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가 아니라 인보이스이기 때문에 수출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수출 건도 검증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는 미국 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거나 원산지증명서 없이 특혜를 신청한 경우일 수 있고, 또한 미국 세관이 FTA와 관계없이 우회수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현지검증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음
-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검증을 거부할 수 있으나, 검증에 응하지 않는 경우 당해 수출 건에 대해서는 특혜가 배제될 수 있으므로 수입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 필요

수출은 하지 않고 생산만 하는 경우

- 미국 세관은 검증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MID 정보 상의 업체를 생산자라고 인식하고 기타 상업서류 상의 주소지에 관계없이 MID 정보 상의 주소지를 방문하게 됨
- 수입자에게 MID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실제 생산자의 주소로 방문이 가능하며, 생산시설을 직접 확인하고자 하는 미국 세관의 검증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음
- 대부분의 수탁 생산자는 수출, 원재료 구매,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신속히 수출자에게 현지검증 사실을 통보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함

생산은 하지 않고 수출만 하는 경우

- 수출만 하고 생산자는 별도로 있거나(계열사나 협력업체 등) 생산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검증 당일엔 생산시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검증 당일 또는 검증기간 중 생산시설을 검증팀이 직접 방문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음

-
- 생산시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생산시설 현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
 - 또한, 생산자에게도 현지검증 가능성에 대하여 알려주고 불시에 검증팀이 방문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요령을 수출자와 생산자가 협의하여 준비 필요

생산시설을 방문하지 않았으나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은 경우

- ○(주)는 수출 시 송품장에 MID 정보로 실제 제조시설이 있는 울산공장의 주소가 아닌 서울 본사 주소를 기재하여 검증팀이 서울 본사를 방문하였으나
 - 업체 담당자가 울산공장의 현황 및 생산공정과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생산공정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 방문조사 이후 울산공장의 생산시설 현황과 작업일지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이상 없음” 판정을 받음

8 현지검증을 對美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검증 대응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거나 검증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 향후 대미 수출시 통관지연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심하고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지검증을 대미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현지검증을 원산지 리스크 관리 기회로 활용

가. 긍정적 판정결과 영향

- 현지조사를 통하여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되면 향후 수출시 통관지연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향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다른 물품에 대하여도 원산지 검증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나. 부정적 판정결과 영향

- 방문조사 당일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별도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
- 최종적으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기 적용된 특혜관세가 취소되며, 향후 미국 수입시 통관이 지연되거나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서면검증에서 부정적인 판정을 받아 현지검증을 받는 업체는 현지검증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여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기회로 활용하여야 함

참고자료

- 한-미 FTA 협정문(섬유류 원산지검증 관련)
- 미국 세관의 섬유류 검증 질의서
-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결정기준(요약)
- 현지검증 관련 문서 양식
- 현지검증시 인정된 증빙서류 견본

연례 기업정보 제공

2. 가. 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자국의 영역에서 섬유 또는 의류의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각 인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획득하고 매년 갱신한다.

- (1)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그 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모든 섬유 및 의류 설비의 소재지를 포함하여, 그 인의 성명 및 주소
- (2) 그 인의 전화번호 · 모사전송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3) 기업의 경우, 그 소유자 · 관리자 및 회사 임원의 성명과 국적 그리고 그 기업 내의 직위
- (4) 그 인이 고용한 피고용인의 수 및 그들의 업무
- (5) 그 인이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과 그 인의 생산능력
- (6) 섬유 또는 의류상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그 인이 사용하는 기계의 수 및 종류
- (7) 대략적인 주당 기계 가동 시간
- (8) 섬유 또는 의류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원단 · 원사 또는 섬유원료를 그 인에게 공급하는 자의 신원, 그리고
- (9) 그 인의 미합중국 내 고객 각각의 성명 및 연락처

대한민국은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 미합중국에게 이 정보를 매년 제공한다.

간접검증

3.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섬유 또는 의류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수출당사국은 수입자가 그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 대우를 신청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러한 검증을 수행한다. 수출 당사국은 또한 그러한 검증을 자체 발의로 수행할 수 있다.

5. 수출 당사국의 인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불법 행위에 관여하고 있다고 수입 당사국이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이 이 협정에 따라 채택하고 유지하는 조치와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관한 그 밖의 국제협정을 이행하는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조치를 포함하여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적용 가능한 통관 조치를 그 인이 준수하고 있음을 수입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함을 수출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현지검증

6. 수출 당사국 영역에서 수출자·생산자나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수행되는 검증과 관련된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인의 사업장에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함께 방문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수출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그 밖의 검증을 지원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한 모든 방문은 수출자·생산자 그 밖의 인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¹⁾ 수출 당사국은 방문 시점에 그 인으로부터 현장 방문의 수행에 대한 허락을 구한다. 수출자·생산자 그 밖의 인이 수입당사국의 적절한 공무원에 의한 방문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이 완료될 수 없고 제3항 또는 제5항에 기술된 결정이 내려질 수 없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제10항에 기술된 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검증이 수행되고 있는 동안, 수입 당사국은 자국 법에 합치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조치는 다음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적용을 중지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제3항에 따른 검증의 경우, 원산지 신청이 이루어진 섬유 또는 의류 상품, 또는
- 나. 불법 행위의 의심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의 대상인 인에 의하여 수출되거나 생산되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관련되는 경우, 그 상품²⁾

1) 제6항을 이행함에 있어, 대한민국은, 그 인의 관련 증거를 인멸하거나 변경할 위험 때문에, 자국의 공무원이 그 인에게 사전 통보를 제공할 경우 검증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8항의 어떠한 규정도 제7.2조(상품의 반출)에 따른 상품의 반출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9.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도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모든 문서 및 사실을 포함하여 검증의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7.6조(비밀유지)는 보고서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한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에 적용된다.
10. 가.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요청 후 12월 이내에 제3항에 기술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섬유 또는 의류 상품과 그 상품을 수출하였거나 생산한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한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자국 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다.
- 나. 수입 당사국이 자국의 검증 요청 후 12월 이내에 제5항에 기술된 결정 중 하나는 내릴 수 없는 경우, 또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검증 대상인 인이 수출하거나 생산하는 모든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부인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조치를 자국 법에 합치되게 취할 수 있다.
11. 제10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이전에,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 통보한다. 수입 당사국은 자국이 각 경우에 맞게 제3항 또는 제5항에 기술된 결정을 내리는 데 충분한 정보를 수령할 때까지 제10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속할 수 있다. 당사국은, 그 당사국이 이 조에 규정된 대로 우회에 관여된 것으로 결정한 인 또는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한 인의 신원을 자국 법에 합치되게 공개할 수 있다.

02 미국 세관의 섬유류 검증 질의서

TEXTILE PRODUCTION VERIFICATION QUESTIONNAIRE 섬유류 생산 검증 질의서

(A complete list of documents needed is presented to the company at the end of the interview.)
본 면담 종료 시점에 필요한 문서 전체 목록이 회사 측에 제시됩니다.

Date : _____
검증일자

Factory Name and Address : _____
공장(생산시설) 명칭 및 주소

Individual(s) Interviewed : _____ Title(s) : _____
면담자 직책

Date Company Established : _____
회사 설립일자

Merchandise Produced : _____
생산물품

Knit? _____ (편물) Woven? _____ (직물) Both? _____ (둘 다 해당)

Estimated Production per Month : _____ Percentage exported to U.S. : _____
월간 생산량 미국 수출비율

_____ (pcs., doz.) Percentage to other countries : _____
(단위 기재) 기타 국가 수출비율

Name and Location of Owner : _____
소유주의 성명/소재지

Related Companies and Locations (Request List) :
관계 회사 및 소재지 (목록)

Subcontractors used (Request list of names and addresses) :
생산에 동원된 협력업체 (업체명 및 주소 목록)

Type of work performed by subcontractors : _____ Percentage : _____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의 유형 비율

Subcontract for (Request list of names and addresses) :

협력계약의 대상 (업체명 및 주소 목록)

Type of subcontracting performed :

수행된 하도급 유형

Percentage : _____

비율

ENTRY DOCUMENT VERIFICATION

수입신고서류 검증

Entry number(수입신고번호) :

HTS number(HS 코드) :

Entry date(수입신고일자) :

Date of Export(수출일자) :

Style Number(s)(스타일번호) :

Preference Program Claimed?

특혜제도신청 여부

If yes, which program?

신청했다면, 어떤 특혜인지?

Date of Fabric Importation(원단 재단일자) :

Date of Cutting(원단 절단일자) :

Daily? _____

매일?

Was a subcontractor used?

협력업체가 동원되었는가?

Date of Sewing(봉제일자) :

Daily? _____

매일?

Was a subcontractor used? Is the MID correct?

협력업체가 동원되었는가? MID가 정확히 맞는가?

Affidavits for raw materials available?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류가 있는가?

(If claiming U.S. or beneficiary country origin)

(미국 혹은 특혜 국가 원산지를 신청하는 경우)

Export documentation(수출서류) :

List customers in the U.S.(미국 내 고객 목록) :

Is a selling agent or trading company used? If so, please provide list.

판매대리인 혹은 무역회사가 동원됩니까? 만일 그렇다면, 목록을 제출하십시오.

Price basis for sales (FOB, CIF, CMT) _____

판매가격의 기준 (FOB, CIF, CMT)

What materials are purchased (yarn, thread, fabric, accessories):

구매하는 원재료는 무엇입니까? (원사, 재봉사, 원단, 부속품)

Fabrics/Components paid for by :

원단/구성요소의 대금결제 주체

Country(countries) from which fabric/components are supplied :

원단/구성요소의 공급국가(들)

Please explain the procedure by which your merchandise is shipped from the factory and subsequently exported. List all freight forwarders and customers brokers used.

귀사의 상품이 공장에서 선적되어 수출되기까지의 절차를 설명하십시오. 동원된 화물포워더와 관세사의 전체명단을 제출하십시오.

From whom do you receive your orders?

귀사는 누구로부터 주문을 받으십니까?

Please provide a list of the names, addresses and countries of origin for all materials suppliers.

모든 원재료 공급자의 업체명 및 주소, 원산지의 목록을 제출하십시오.

Please provide the number of all employees working today, including the areas in which they are working, i.e., cutting, sewing, packing, etc.)

금일 근무 중인 전체 직원 수를 알려주십시오. 각 작업 분야(예, 재단, 봉제, 포장, 기타) 포함

Hours in Shift(교대시간) :

Shifts per day(일일 교대 횟수) :

Work days per week(주당 작업일수) :

Overtime hours per week(주당 초과근무 시간) :

Percentage of exports to the U.S. claiming preference :

미국으로의 특혜신청 수출 비율

Origin of yarn (if yarn forward):

원사의 원산지 (Yarn Forward의 경우)

Names and addresses of yarn and fabric producers:

원사 및 원단 생산자의 업체명과 주소

Origin of fabric (if fabric forward) :

원단의 원산지 (Fabric forward의 경우)

Names and addresses of fabric producers:

원단 생산자의 업체명과 주소

Country of cutting (if cut and sew requirement):

재단 국가 (재단과 봉제가 필요한 경우)

Names and addresses of cutters:

재단업체의 업체명과 주소

FACTORY TOUR

공장 방문

Storage area : 보관 구역

How much production material is stored presently?

현재 보관 중인 생산 원재료의 물량은?

What are the types and countries of origin of the fabric and accessories stored presently?

현재 보관 중인 원단과 부속품(액세서리)의 유형과 원산지는?

Percentage of U.S. and beneficiary fabric :

미국 및 특혜적용대상 원단의 비율

Percentage of foreign fabric :

역외산 원단의 비율

Production area : 생산시설 구역

No of : Cutting tables

재단 작업대

Total :

총 대

Operating today :

금일 작동 : 대

Knives/Cutting Machines

재단기계

Total :

총 대

Operating today :

금일 작동 : 대

Sewing Machines

봉제기계

Total :

총 대

Operating today :

금일 작동 : 대

Specialty Machines

특화기계

Total :

총 대

Operating today :

금일 작동 : 대

03 ▶ 한-미 FTA 섬유류 원산지 결정기준(요약)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의 형태를 취하면서 동시에 제외되는 세번을 열거하는 복잡한 규정인 바,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6단위 세번별로 주의 깊은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PSR(Product Specific Rules) 정리도표

- 제52류의 면섬유와 면사는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므로 역내산 원면을 사용해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함
- 제60류의 편물 중에서 면사를 사용한 편물의 경우에는 원면부터 역내산을 사용해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함, 단, 모, 견, 마사를 사용하여 편직한 편물의 경우에는 그 원사부터 역내산을 사용하면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

	분류 세번 및 품목			섬유부터 역내산일 것	원사부터 역내산일 것	원단부터 역내산일 것	Remarks
	류	소호	품목				
천연재료	50 ~ 53류	5001-5003, 5101-5105, 5201-5203, 5301-5305	fiber	○			
		5004-5006, 5106-5110, 5306-5308	yarn		○		
		5204-5207	yarn	○			면사는 원면부터 역내산일 것
		5111-5113, 5208-5212, 5309-5310	fabric		○		
		5007, 5311	fabric			○	
인조 필라멘트 스테이플 섬유	54 ~ 55류	5501-5507	fiber	○ (5201~5203호로 부터 변경만)	○		52류 재료에 엄격한 기준 적용 (재생섬유의 경우, 면섬유는 역내산일 것)

	분류 세번 및 품목			섬유부터 역내산일 것	원사부터 역내산일 것	원단부터 역내산일 것	Remarks
	류	소호	품목				
인조 필라멘트 스테인블 섬유	54 ~ 55류	5401-5406 5508-5511	yarn	○ (5201~5203호 5501~5503호, 5505~5507호로 부터 변경만)	○		52류 재료에 엄격한 기준 적용 (재생섬유의 경우, 면섬유는 역내산일 것)
		5407-5408, 5512-5516	fabric		○		
워딩 - 펠트, 특수직물	56류, 58류	5601-5609	fiber yarn fabric	○ (5501~5507호로 부터 변경)	○		55류 재료에 엄격한 기준 적용 (인조필라멘트 섬유를 사용할 경우 해당섬유는 원산지일 것)
양탄자와 그밖의 바닥깔개	57류	5701-5705	fabric			○	
침투 - 도포직물	59류	5902, 5910 5901, 5911, 5903-5909	fabric	○ (5501~5507호로 부터 변경만)		○	
편물	60류	6001-6006	fabric	○ (52류, 5501~5503호, 5505~5507호로 부터 변경만)	○		면사로부터 생산된 편물의 경우, 원면부터 역내산일 것
편물제 의류	61류	6101-6117	clothes		○		가공공정 기준과 결합 (재단, 봉제 등)
비편물제 의류, 기타 방직용 섬유	62 ~ 63류	6201-6217, 6301-6310	clothes etc.		○		

섬유류의 특별 규정 2가지

- 한-미 FTA에서는 양 당사국간에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는 재료의 경우 상대국 권한 있는 기관의 승인을 얻어, 타국산 재료로부터 생산된 섬유제품을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해당 원재료를 취급하는 업체에서는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제 11부(방직용 섬유와 그 제품)의 규칙 1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섬유 재료 (원료, 원사 및 원단) 또는 이러한 재료와 부속서의 PSR을 충족하는 하나 이상의 상품과의 혼합물로부터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 된 것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 **현행**, 큐프라레이온 필라멘트사(HS 5403.39)와 캐시미어 방적사(HS 5108.10 및 5108.20)이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하지 아니한 재료로 승인되어 있음(관련문의는 섬유산업연합회 FTA 지원센터에서 가능함)

-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이 그 상품의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구성요소의 생산에 사용된 어떤 섬유 원료 또는 원사가 원산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총 중량이 7%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됨. 다만, 탄성사를 포함하는 상품은 그러한 원사가 어느 한 쪽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경우에만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최소허용기준의 예외 기준이 적용됨에 유의해야 함

제61류 및 제62류의 세부 규칙

- 제61류 또는 62류의 의류 상품의 경우, 부 규칙 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칼라 및 커프스를 제외하고 의류 걸감 원단을 기준으로 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제61류와 제62류의 규칙1에 따라, 수출 의류제품에 안감이 포함될 경우 그 안감재료로 사용되는 일부 원단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 것이어야만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므로 해당 규칙을 상세히 검토하여야 함

04 ▶ 원산지검증 관련 문서 양식

한-미 FTA 원산지현지검증 안내문

1. 이번 원산지조사(현지 검증)는 귀사가 생산(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해 미국 세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 지는 것이며, 한국과 미국 양국 세관 직원들이 참여하여 수행합니다.
2. 원산지조사는 한-미 FTA 제4장 및 6장, FTA 특례법 제13조·동법 시행령 제15조의7에 근거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자에게 원산지조사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당일 통지 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원산지조사(현지검증)는 귀사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수행됩니다. 또한, FTA특례법 제13조제9항, 관세법 제112조에 따라 원산지조사에 변호사, 관세사를 참관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습니다.
4. 귀사가 원산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원산지 조사는 수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귀사가 수출한 제품에 대해 미국 세관의 특혜관세적용은 거부되며, 미국의 수입자는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FTA특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1천만원 미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5. 원산지 조사 결과를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FTA특례법 제13조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조사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 원산지조사(현지조사) 통지서 1부.
2. 원산지 조사 동의서 1부. 끝.

2014년 6월 일

서울세관장

문서번호 : (세관)-(부서명)-(연도)-US-(일련번호)

원산지 현지조사 통지서

① 조사 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사업장소재지			

② 통지 내용

조사예정기간			
조사대상 범위 (수출입기간)			
조사 사유			
조사 내용			
조사 방법			
조사 공무원	(직책)	(성명)	(연락처)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관한 관세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의7, 관세법 제1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원산지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미 FTA협정 제4장 및 제6장의 규정에 따라 관련 물품에 대한 상대국의 협정관세대우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우리 세관에서 실시하는 원산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FTA특례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FTA특례법 제13조제9항, 관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관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14년 6월 일

서울세관장 직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로서의 귀하의 권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존중받고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세공무원은 귀하가 신성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며, 귀하의 권리가 존중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현장은 귀하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귀하는 수출입신고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관세포탈 등의 혐의가 없는 한 성실한 납세자이며 귀하가 제출한 자료는 진실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 귀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조사의 사전통지와 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3. 귀하는 관세공무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관세사 등 전문가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4. 귀하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조사받은 사안에 대하여 다시 조사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5. 귀하는 자신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신의 권리행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귀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심사청구 등을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서울세관장

납세자권리현장 수령증

귀 세관에서 우리회사에 대하여 2014년 월 일 실시하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 권리현장을 다음과 같이 수령하였습니다.

수령일시 : 년 월 일

수령장소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수 령 자 :

생 년 월 일 :

회사와의 관계 :

서명 또는 날인 :

서울세관장 귀하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신고 안내문

세관 기업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를 통하여 상담하거나 건의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관세행정에 따른 권리·이익침해, 불편사항 신고 및 제도개선 건의
-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수출입물품 검사정보 제보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세관공무원의 부정부패·행동강령 위반신고
- 관세조사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 및 세관공무원의 권한 남용행위

※ 신고방법

-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
(홈페이지 > 고객의 소리 > 관세행정 통합 민원센터)
- 전화 및 FAX : ☎ 080-512-2339, FAX) 080-512-2340
- 우편 및 방문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정부대전청사 1동 4층 감사담당관실

05 ▶ 현지검증시 인정된 증빙서류 견본

수출거래 사실




- ①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 ② 선적 전 검사결과서(Audit Form)
- ③ 외국환 거래 계산서
- ④ 수출대행계약서(Export Agency Contract)
- ⑤ 선하증권(B/L)

수출품 생산사실




- ① 작업의뢰서
- ② 작업지시서
- ③ 원사 소요 내역서
- ④ 편직기록(Knitting records)
- ⑤ 월간/일별 생산 실적(ERP 자료)
- ⑥ 송금확인증

원재료 구매사실



- ① 매도확약서(OFFER SHEET)
- ② 판매거래처원장
- ③ 출고내역서
- ④ 출고집계표
- ⑤ 외화획득용 원료 · 기재 구매확인서

원산지 증명




- ① 국내제조확인서(수출물품의 재료)
- ② 원산지확인서(수출물품 또는 그 재료)
- ③ 원산지증명서(수출물품)

수출거래 사실 ①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품 주문을 위해 수량, 납기일, 운송수단 및 거래조건 등을 기재하여 발급한 구매 주문서이므로 해당 제품의 실제 거래사실 발생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검증대상 송품장 상의 아이템, 스타일 및 선적일 등 제품규격이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와 동일한지 확인한 후 제시해야 함



tel+760.918.
fax+760.918.
web+

Purchase Order

Date	P.O. No.
8/30/2013	DSPR14D2

Vendor

Ship To

Reference #	Terms	Due Date	Ship Via	Rep	Order By
	Due on receipt	2/3/2014	LDP/DDP Boat	B.J.	Stafford

Item	Description	Color Specs	Qty	Rate	Due Date	Amount
NOTES	PO# Spring2014Delivery#2- Revised: Sept. 23, 2013				Delivery Window: 1/20-2/3	
DSK-135	DGK OG Crew Socks Pair - Grey/White	Grey/White	600			
DSK-136	DGK OG Crew Socks Pair - Purple/White	Purple/White	500			
DSK-137	DGK OG Crew Socks Pair - Black/White	Black/White	1,500			
	Total: 2,600					
DSK-138	DGK Stay Smokin' Crew Socks Pair - White/Black	White/Black	4,420			
DSK-33	DGK Stay Smokin' Crew Sock Pair - Black/Green	Black/Green	5,500			
DSK-139	DGK Stay Smokin' Crew Socks Pair - Ath Heather/Purple	Ath heather/...	2,920			
	Total: 12,840					
NOTES	-Product to Match Approved Samples, No Substitutions or Shortages Please -Delivery Window: 1/20/2014-2/3/2014 -Product To Be Prop 65 Compliant -All Socks To Receive DGK Band -3-Packs Socks Should Contain 1 Pair of Each Color Socks and Polybagged with Description Printed Label / Sticker -Pair Socks Should Be Individually Polybagged with Description Printed Label / Sticker -LDP/DDP to -Please Advise When Shipment Exits Port					
				Total		

Comments:

OCR		Defects	Major
* AQL:	0.25		
* Sample Size:	125		
* Defective units:	0		
* Results:	Pass		Total:
Comments:			

Packing				Defects	Major
* Cartons Shipped	Audit Type	* Cartons Inspected	* Defective Cartons		
205	Factory Audit	19	-		
	Assessment Audit	10	-		
Total:		29	-		
*Results:	Pass				Total:
Comments:					

Comments:

Auditor's Comments:

Merchant's Comments:

TEST NO. ADD. : H351-13-14266.
OK TO SHIP.

Confirmed and signed by: _____
(Factory Representative)

Auditor: _____

QA Manager: _____

The above is a random representative sampling of the whole lot only. Acceptance of goods contingent upon final inspection approval of _____ Inc.

수출거래 사실 ③ 외국환 거래 계산서

수입자로부터 거래대금(수출대금)을 영수한 은행이 발행한 서류로서 송금인(수입자)과 수취인(수출자)이 확인되어 수출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 가능

※ 신용장(L/C) 거래의 경우 신용장(L/C) 사본 등을 제출하여도 인정받을 수 있음

③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Statement)
외국환 거래 계산서

(F Trading) (Date) 2014-04-30 (18:47:01) 강남대로(0480-0071)원

계좌번호 또는 REF-NO	거래명	의화로 대체한 금액	받은 원화합계
- - - 00890	해외의화송금지급 (USD Amount)		Industrial Bank of Korea
구분	통화명	의화금액	환율
송금금액 (Amount)	USD		
(의화대체)			1031.00
***적본요 계산서번호 2014-05-09 원 외화액(%) 미입금 되어있습니다 ***인화금액			
Remitter ⇒ 송금인: CO	수취계좌: (Account No)		
Beneficiary ⇒ 수취인: TRADING			
장부가가격적용 USD 환산금액:	문의전화 02) 3472-8600		

항상 저희 은행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환143 | *60*120 | 오픈700/야 | 총급한도82373 | 2011.5.12판

Industrial Bank of Korea

Industrial Bank of Korea

수출거래 사실 ④ 수출대행계약서(Export Agency Contract)

수출대행자(무역회사 등 에이전트)와 수출위탁자(실제 생산자) 사이의 수출을 대행하는 계약서로서 물품명세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출 사실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송품장상에 수출대행자만 나타난 경우 실제 수출자를 증명할 수 있음. 특히 수출대행자가 홍콩 등 제3국에 위치한 경우에 실제 수출자가 한국회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임

Export Agency Contract

◆ 수출대행계약서(단순명의대행) ◆
INTERNATIONAL CO., LTD

(Agency :

수출대행자(간)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 호 : 주식회사
대표자 : 대표이사

(서초구)
인터내셔널

수출위탁자(을)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상 호 : 주식회사
대표자 :

(Export : INTERNATIONAL

수출대행자 인터내셔널 (이하 "간"이라 한다)과 수출위탁자 인터내셔널 (이하 "을"이라 한다)은 CO., LTD)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 다 음 -

제 1조(대행내용)

수출 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품명	P.O.#	수량	금액	선적기한	INVOICE NO.	L/C 또는 계약번호	비고
SOCKS	QX6EU-PA	928		2/16,19,22,23	HI133424	O/A	
	QT4NG-NA	156			HI140033		
	QU5JQ-AA	512			HI140036		
	QX6ZB-5A	2,000			HI140098		
	QX6KI-PA	324			HI140102		
	RG0OR-PA	104			HI140108		
	QX6JC-PA	1,420			HI140111		
	RA2YI-3A	134			HI140113		
	QX6HH-PA	292			HI140116		
	QX6MC-PA	102			HI140119		
	QX6HU-PA	486			HI140122		
	QX6DM-PA	814			HI140125		
	QX6CP-PA	490			HI140128		
	QX6JO-PA	196			HI140131		
	QX6MT-TA	194			HI140134		
	RR3WR-3A	1,650			HI140140		
	RJ2YO-PA	3,116			HI140143		
	RT8IX-3A	375			HI140147		
	RT8JH-3A	250			HI140150		
	RT8JX-PA	312			HI140154		
	QZ1FO-3A	188			HI140158		
	QZ1FE-3A	438			HI140164		
	RW5IZ-PA	15,990			HI140167		
	QX6QJ-PA	1,738			HI140171		
	QX6WQ-PA	1,972			HI140178		
	QZ1HI-3A	200			HI140183		
	RTBIL-3A	500			HI140195		
	RS4AJ-PA	1,324			HI140197		
	QT4MZ-NA	204			HI140201		
	QU5NB-AA	1,038			HI140204		
	RR3WS-3A	1,500			HI140210		
	RP2PR-NA	2,666			HI140211		
	RP7KW-5A	1,500			HI140214		
	RP7JR-5A	1,400			HI140215		
	RP7KM-5A	1,400			HI140216		
RP7IU-5A	1,600		HI140217				
RP7KR-5A	1,400		HI140218				
RP7KQ-5A	1,100		HI140219				
RP7KG-5A	1,500		HI140220				
RJ1MF-AA	1,004		HI140224				
RZ3GO-NA	5,308		HI140226				

수출거래 사실 ④ 수출대행계약서(Export Agency Contract)

RZ3GP-NA	5,716			HI140229
RZ3GT-NA	2,694			HI140232
RZ3GM-NA	3,352			HI140235
RZ3GS-NA	2,086			HI140238
RZ3GW-NA	5,320			HI140246
RZ3GR-NA	5,712			HI140249
RZ3GN-NA	7,568			HI140254
	90,271			
//////////			//////////	

제 2 조(대행의 범위)

1. "갑"은 단순회 영의대행(단순수출대행)만 하고 "을"이 실제 수출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에 "갑"의 영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을"이 원하는 "갑" 영의의 각종 수속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제공하여 "을"이 실제 수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을"은 "갑"의 영의를 갖고 수출승인, 수출통관 및 선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출 절차를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3. "을"이 선적 완료후 "갑"의 영의로 작성된 선적서류에 대해 은행에서 선적서류 매입(NEGO)후에 회수한 수출대견외환증서 등은 "을"의 소유로 한다.
4. 매입(NEGO) 및 사후 발생되는 모든 수수료는 "을"이 부담한다.

제 3 조(대행수수료 및 지급)

"을"은 본계약에 따라 수출대행수수료로서 수출대행물품 가액 총 _____ 의 로 계산하여 _____ 불 아래의 정한 내용에 따라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1. 세급계산서 발행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개별발행하며 원화 환율적용은 선적일 최초 전산환매입율로 계산한다.
2. 대행 수수료는 "갑"이 "을"에게 수출대금 입금 완료후 "을"은 "갑"에게 5 일 이내 지급하기로 한다.

제 4조(물품의 수출)

"을"은 "갑"의 영의로 발급된 수출승인서(E/L) 등에 따라 제5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수출대행물품을 수출하여야 하며 수출이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수출대행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5조(물품의 선적)

"을"은 본건 선적을 제 1조 대행내용에 의거하여 선적하기로 한다.

제 6조(물품의 보증)

1. "을"은 수출완료후 수출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 등이 신용장 또는 주문장(P.O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상의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한다.
2. "갑"은 만일 수출물품의 규격과 품질 등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해외의 원계약자(수입자)로부터 물품의 대체수출을 요구 받거나 또는 수출대금의 반환등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중 사함을 즉시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을"은 2항의 경우 "갑"의 요구에 따라 당해 물품의 대체수출 또는 당해 물품의 수출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는 등 "갑"이 해외의 원계약자(수입자)로부터 제기되는 CLAIM(대금결제 거절, 인도지연 및 수출 불이행 등 모든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변제토록 하며, 이 경우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대체수출물품의 대가와 이에 따르는 장비, CLAIM 해결에 소요된 비용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 7조(권리의무의 양도)

"을"은 "갑"의 승인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8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의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는 "갑"과 "을"의 쌍방의 합의하에 당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수출거래 사실 ⑤ 선하증권(B/L)

선하증권을 통해서 수출물품의 송하인(consignor)과 수하인(consignee)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적항이 한국으로 나타나므로 실제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있음

※ 운송인 영수증(Forwarders Cargo Receipt)도 인정될 수 있음

6-4) Bill of Lading

ORIGINAL FORWARDERS CARGO RECEIPT NO:

SELLER (PRINCIPAL OR LICENSEE) TRADING SEOCHO-GU SEUL KOREA 137-863 BUYER (NAME AND ADDRESS) PA 15203-2382 ATT: NATE NOTIFY PARTY (NAME AND ADDRESS) CA 90045 U.S.A ATTN: PAUL	DATE CARGO RECEIVED COUNTRY OF ORIGIN KOREA (SOUTH) ALSO NOTIFY PARTY PA 15203-2382 ATT: NATE EXPORT CARRIER (VESSEL, VOYAGE) APL SINGAPORE 180E EXPORT REFERENCE PLACE OF RECEIPT BUSAN, KOREA PORT OF LOADING BUSAN, KOREA PORT OF DISCHARGE LOS ANGELES, CA PLACE OF DELIVERY LOS ANGELES, CA
--	--

MARKS AND NUMBERS	NO. OF PKGS.	PARTICULAR FURNISHED BY SELLER	GROSS WEIGHT	MEASUREMENT
<FRONT> SHIP TO#1977 COUNTRY OF ORIGIN: MADE IN KOREA CARTON DIMENSIONS: GROSS CARTON WEIGHT: <SIDE-PRE PACK> BSI PO#/GENDER/ DIVISION: COO:MADE IN KOREA	139 CTNS	INVOICE NO. P.O.NO.154539 STYLE NO.7001 WOMEN'S 3PACK SHORTIE SOCK Q'TY:10,000PACK (=30,000PRS) P.O.NO.154542 STYLE NO.7001 WOMEN'S 3PACK SHORTIE SOCK Q'TY:1,500PACK (=4,500PRS) TOTAL 34,500 PRS *** SEE ATTACHMENT PAGE 2 THRU 2 *** ONE HUNDRED AND THIRTY-NINE CTNS ONLY	FREIGHT COLLECT KGS 888.600	CBM 8.680

STATEMENT :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OF DOCS RCVD:12 FEB2014 RELEASE DT:12 FEB2014 RECEIVED 1 ORIGINAL 4 COPIES OF THE FOLLOWING DOCUMENTS WHICH PLUS 2/3 ORIGINAL BILLS OF LADING WILL BE DISPATCHED TO THE PARTIES AT PORT OF DISCHARGE AT TIME OF SHIPMENT AS INSTRUCTED BY THE CUSTOMER. COMMERCIAL INVOICE CERTIFICATE OF ORIGIN PACKING LIST SINGLE COUNTRY DECLARATION	MISC CHARGES TOTAL (KRW) APL LOGISTICS LTD.(APL) HEREBY ACKNOWLEDGES RECEIPT OF THE PACKAGES OR OTHER SHIPPING UNITS SAID TO CONTAIN THE GOODS ABOVE(THE GOODS) IN APPARENT EXTERNAL GOOD ORDER AND CONDITION UNLESS OTHERWISE STATED THE SELLER BUYER AND ALL OTHERS HAVING AN INTEREST IN THE GOODS(THE "CARGO OWNERS") ARE ADVISED AND BY DELIVERING THE GOODS AND ACCEPTING THIS RECEIPT AGREE THAT THE RECEIPT, CUSTODY, CONSOLIDATION AND FORWARDING OF THE GOODS BY APL ARE SUBJECT TO ALL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ON THE REVERSE SIDE OF THIS FORWARDERS CARGO RECEIPT AND INCORPORATED BY REFERENCE ON THIS SIDE AND HEREOF THE NUMBER ON THIS FORWARDERS CARGO RECEIPT MAY BE WRITTEN, STAMPED, OR PRINTED. ORIGINAL OF THE FORWARDERS CARGO RECEIPT, ISSUED BY APL LOGISTICS LTD., AS AGENT FOR BUYER 1 BY: <u>APL LOGISTICS KOREA, LTD</u> As Agent for APL Logistics Ltd
--	---

수출품 생산 사실 ① 작업의뢰서

수출자가 수출물품의 생산작업을 의뢰한 사실증빙으로 인정 될 수 있음

※ 해당 수출건과 수량 및 규격 등을 비교하여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작업 의뢰서(VMI)

INT'L CO., LTD.

공정명(편직/가공):

작업번호 : 13-638 (6차)

BUYER :

스타일번호: 638023

수량 : 40,000pk(=120,000prs / 10,000dz)

품명 : WOMEN'S NEW MESH 3PK SOCK

중량 : 28.2gr/pair

침수 : 132N

(02)552- FAX : (02)549-

결	담당	과장	차장	부장	상무	전무	사장
재							

작업의뢰일자 : 2013. 12. 30.

(하프쿠션)

납기일자 : 별도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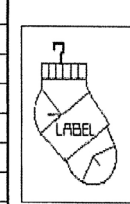
작성지:

원자재명	CM	SPAN	POLY	POLY	고무시	
실의번호	20'S/1	40/150	150D/1	100D/1	#90	
혼용비율						
색상명 / LOSS						
WHITE						
BLACK						
#334 GREY SCALE						
#853 CLOUD COVER						
#603 LEMON PUCKER						
#175 ROSE UP						
#302 TROPICAL PLUNGE						
OFF WHITE						
R/W						
TOTAL						

*포장방법(3PRS/1PK)

SIZE 침수 바닥(A) 측(B) 중앙

132N 21cm 6cm 28.2g (일본식 SIZE)



*패킹방법

WHITE COMBO(02)

GREY COMBO(06)

BLACK COMBO(12)

MULTI COMBO(13)

▶ COLOR & SIZE ASSORTMENT

품재/기기도	QTY(수량)	TOTAL
WHITE COMBO (백색/회색로고)	48,000	48,000PRS
GREY COMBO (백색/회색링글)	72,000	72,000PRS
TOTAL	120,000	120,000PRS

▶ 주의사항

- 1) 편사 입고시 지금으로 LOT SAMPLE 칼라별 지금으로 편직요망.
- 2) 편직후 시야기 철저히 하고 봉조 양쪽 끝 0.4CM로 확실히 자를것.
- 3) 앞가기도 부분에 루프 및 봉조사 끼어 있는것 절대 없게 할것.
- 4) 3PK 작업이므로 각각 칼라 및 사이즈 편차 주의요망.
- 5) 파일로 넘어가는 자리 고무라 주의
- 6) 편직시 헛트 확실히 구분 작업.
- 7) 봉조 씹힘 및 땀구 주의 요망.
- 8) 고무 부분 시야기 철저히.

수출품 생산 사실 ⑤ 월간/일별 생산 실적(ERP 자료)

생산자가 ERP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별 생산내역 화면을 인쇄하여 제출한 것으로서
직접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음

※ CBP는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관리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음

√ Daily production report for November 2013

시스템(인) : 도용원(인)



월간/일별 생산개항 및 실적조회

출판트:	입찰:	단위 구분 2	합계	22	23	24	25	26	27	28	29	30
FERT	105084	NY SDY 40/12 FX(G22-11C)	KG 실적									
	104370	NY FY 15/13 BK(H68)	KG 실적									
	103466	NY SDY 45/13 FX(G24-14A)	KG 실적									
	105085	NY SDY 20/6 BR8(F260-19D)	KG 실적									
	100279	NY PTY 40/14 SD(4147F)	KG 실적									
	100280	NY PTY 40/14 SD(4147S)	KG 실적									
	100281	NY PTY 40/14 SD(4147Z)	KG 실적									
	103555	NY POY 85/24 FX(R88-14D)	KG 실적									
	105089	NY SDY 210/68 BR(887-20B)	KG 실적									
	104183	NY POY 60/48 SD(P6081)	KG 실적									
	104790	NY POY 170/48 SD(PA783)	KG 실적									
	105148	NY SDY 30/24 BK(5042-18A)	KG 실적									
	105111	NY POY 115/24 SD(PA241)	KG 실적									
	105106	NY POY 85/24 SD(P8240)	KG 실적									
	105107	NY POY 85/24 SD(P6241)	KG 실적									
	105114	NY POY 60/48 SD(P6480)	KG 실적									
	105117	NY POY 39/13 SD(P3130)	KG 실적									
FERT	200101	NY CHIP FD	KG 실적									
HALB	200102	NY CHIP SD	KG 실적									
	200103	NY CHIP BR	KG 실적									

원재료 구매 사실 ② 판매거래처원장

- 원사 생산 업체가 거래처별로 수불일자, 품명·규격 및 납품처를 정리한 장부
- 수출자가 원사 공급업체와의 거래사실 증빙을 위하여 원사 공급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제출

판매 거래처원장

<기간:2014.01.01 - 2014.01.31>

[작업일= 2014/02/04]

[작업자= 영업부]

(주) 상사	구분: LOCAL						
수불일자	번호	품목명	발주번호	컬러	납품처	수량	
2014.01.16	201401-00503	30/75 R/W	900882-12-13KR외	R/W	섬유	9.9	
2014.01.16	201401-00508	30/75 DY	FR13K847CG외	#290	BLUE/N (CHINA)	12.3	
2014.01.16	201401-00508	30/75 R/W	FR13K847CG외	R/W	R/WHITE (CHINA)	179.3	
2014.01.17	201401-00537	20/70 DY	FR13K779CG외	#402	ICY PINK (CHINA)	0.3	
2014.01.20	201401-00591	30/70 DY	FR13K835CG외	#223	HILLSIDE GREE (CHINA)	12.1	
2014.01.20	201401-00591	30/70 DY	FR13K835CG외	#556	SPORT ORANGE (CHINA)	13.2	
2014.01.20	201401-00591	30/70 DY	FR13K835CG외	#757	CLYPSO (CHINA)	20.4	
2014.01.20	201401-00591	30/70 DY	FR13K835CG외	#946	MERCURY BLUE (CHINA)	13.0	
2014.01.20	201401-00591	30/70 DY	FR13K835CG외	#387	ISLAND TURQUIC (CHINA)	0.9	
2014.01.20	201401-00592	30/70 DY	FR13K854G	#556	SPORT ORANGE	섬유 8.0	
2014.01.20	201401-00592	30/70 DY	FR13K854G	#946	MERCURY BLUE	섬유 6.5	
2014.01.22	201401-00657	30/70 DY	FR13K835CG외	#354	FRUIT PUNCH (CHINA)	12.0	
2014.01.22	201401-00657	30/70 R/W	FR13K835CG외	R/W	R/WHITE (CHINA)	313.6	
2014.01.22	201401-00668	30/75 R/W	900882-12-13KR외	R/W	R/WHITE	섬유 112.8	
2014.01.22	201401-00672	30/75 DY	900882-01-14KR	#370	NAVY	섬유 79.2	
2014.01.23	201401-00686	20/70 R/W	FR14K030CH	R/W	R/WHITE	상사 14.5	
2014.01.24	201401-00729	30/70 DY	FR13K823G외	#452	S/FLOWER (CHINA)	27.7	
2014.01.24	201401-00730	30/70 DY	FR13K813CG외	B20	ISM120 (CHINA)	6.8	
2014.01.24	201401-00731	30/70 DY	FR13K854G	#556	SPORT ORANGE	섬유 1.3	
2014.01.24	201401-00736	30/70 DY	FR13K835CG외	#362	AQUA BLUE SKY (CHINA)	6.5	
2014.01.24	201401-00736	30/70 DY	FR13K835CG외	#946	MERCURY BLUE (CHINA)	0.4	
2014.01.24	201401-00739	30/70 DY	FR13K835CG외	#757	CLYPSO (CHINA)	0.6	
2014.01.27	201401-00756	30/75 DY	FR14K029G	#004	D/RED	섬유 23.7	
2014.01.27	201401-00756	30/75 DY	FR14K029G	#109	NAVY	섬유 24.5	
2014.01.28	201401-00795	30/70 DY	FR13K4002R	18-3963	LAPIS BLUE	산업 3.0	
2014.01.28	201401-00795	30/70 DY	FR13K4002R	13-0650	LIMEAD	산업 3.0	
2014.01.29	201401-00819	20/70 R/W	FR14K012CH외	R/W	R/WHITE (CHINA)	303.0	
2014.01.29	201401-00819	20/70 DY	FR14K012CH외	76-223	76-223 (CHINA)	199.2	
2014.01.29	201401-00819	20/70 R/W	FR14K012CH외	R/W	R/WHITE (CHINA)	345.0	
2014.01.29	201401-00820	20/70 R/W	FR14K032CH	R/W	R/WHITE (CHINA)	23.2	
2014.01.29	201401-00821	30/70 R/W	FR13K835CG외	R/W	R/WHITE (CHINA)	76.0	
2014.01.29	201401-00822	30/70 R/W	FR13K823G외	R/W	R/WHITE (CHINA)	276.0	
2014.01.29	201401-00841	30/70 DY	FR13K823G외	#004	R/RED (CHINA)	-14.3	
2014.01.29	201401-00841	30/70 DY	FR13K823G외	#802	NAVY UNIFORM (CHINA)	-30.1	
2014.01.29	201401-00841	30/70 R/W	FR13K823G외	R/W	R/WHITE (CHINA)	-276.0	
2014.01.29	201401-00841	30/70 DY	FR13K823G외	#452	S/FLOWER (CHINA)	-27.7	
2014.01.29	201401-00842	30/70 DY	FR13K823G외	#004	D/RED	니트 15.4	
2014.01.29	201401-00842	30/70 R/W	FR13K823G외	R/W	R/WHITE	니트 275.4	
2014.01.29	201401-00842	30/70 DY	FR13K823G외	#452	S/FLOWER	니트 27.7	

원재료 구매 사실 ③ 출고내역서

- 원재료 공급업체의 거래업체별, 월별 출고 출고 내역서
- 원사의 종류, 규격, 출고일, LOT번호, 중량 단가 등이 나타나 있으므로 재료 구매 증빙이 될 수 있음
- ※ 원재료 출고일이 제품생산일보다 앞선 날짜인지 여부 확인이 중요함

13년 12월분 출고 내역서

회 임 계 명: (주) 상사
 회 계 구 번 호: 20131231-013
 [원 가 공]

계종	STYLE NO	색상명	출고일자	LOT번호	접수중량	출고중량	단가	금액 (단위: \$)	출고처
C/C20(50/50)(COOLMAX)	270367-11	000 WHITE	2013-12-05	C1311-1090-02	806.00	43.10			
			2013-12-13	C1311-1090-02		262.90			
			2013-12-13	C1311-1090-01		500.00			
STYLE 소계					806.00	806.00			
실수 소계					806.00	806.00			
C/C30(50/50)(COOLMAX)	547E 추가	VICTORIAN PURPLE	2013-12-20	C1312-0962-01	5.00	5.40			
STYLE 소계					5.00	5.40			
C/C30(50/50)(COOLMAX)	547E-1	NEON RUNNING PINK	2013-12-05	C1311-1520-01	18.00	9.00			
			2013-12-16	C1312-0719-01		9.00			
			2013-12-05	C1311-1521-01	21.00	10.80			
		SUN BLEACHED	2013-12-16	C1312-0720-01		10.80			
			2013-12-05	C1311-1519-01	15.00	7.50			
		TRUE BLACK	2013-12-16	C1312-0718-01		7.50			
STYLE 소계					54.00	54.00			
실수 소계					54.00	54.00			
C/C30(50/50)(COOLMAX)	547E-추가	14-4105 GREY	2013-12-16	C1312-0611-01	6.00	5.40			
		4081 CHALK	2013-12-16	C1312-0610-01	12.00	10.80			
		B009	2013-12-16	C1312-0609-01	12.00	10.80			
		SEAGLASS	2013-12-05	C1311-1498-01	5.00	5.40			
STYLE 소계					35.00	32.40			
실수 소계					35.00	32.40			
CM 30/1	779C3외	109 BLUE GALAXY	2013-12-13	C1312-0447-02	153.80	151.20			
		179 ANTIQUE WHITE	2013-12-20	C1312-0892-01	115.70	115.00			
		261 STRAWBERRY FIELD	2013-12-13	C1312-0405-02	25.00	25.00			
		302 MILITARY BLUE	2013-12-13	C1312-0406-01	168.20	168.00			
		386 BRIGHT SEA FOAM	2013-12-20	C1312-0893-01	168.20	168.00			
		875 PHOSPHOMS	2013-12-20	C1312-1306-01	51.20	51.00			
		988 NEW OFF WHITE V2	2013-12-20	C1312-0572-05	120.20	121.00			
		989 BLUE ALLURE	2013-12-20	C1312-0895-02	25.00	25.00			
		990 PINK CAMEO	2013-12-13	C1312-0413-01	168.20	168.00			
STYLE 소계					995.50	992.20			
실수 소계					995.50	992.20			

상사 (주)

원재료 구매 사실 ④ 출고집계표

- 원재료 공급업체가 기준일자별로 관리하는 집계표
- 주문번호, 사종, 컬러, 출고일, 출고량, 납품처, 거래가격이 나타나 있으므로 재료 구입 증빙이 될 수 있음

D-5-3) Yarn Delivery Note from
[출고집계표] 2/4

거래처: 삼사 (Trading) 기준일: 2013.12.1-12.31

ORDER NO.	사종	COLOR	발주량(kg)	납품처	출고일자	출고량(kg)	비고
FR13K809E	70D/2	EVENING BLUE	7.5		12월 31일	7.5	
FR13K809E	70D/2	HOLIDAY SKY	5		12월 31일	5	3249
FR13K809E	70D/2	KIWI BLAST	7		12월 31일	7	3202
FR13K809E	70D/2	MIGHTY APHRODITE	6		12월 31일	6	
FR13K809E	70D/2	S/W	8.5		12월 31일	8.5	
FR13K809E	70D/2	TIDAL FOAM	10		12월 31일	10	
FR13K809E	70D/2	3349	8		12월 31일	8	
FR13K809E	70D/2	VOLTAGE PINK	11.5		12월 31일	11.5	
12월 19일	100D/1	R/W	1		12월 19일	1	
	100D/1	3349	1		12월 19일	1	30BK

b3 6 kg

***색상별 출하 집계**

사종	Dyed	R/W	Total
70D/2	63.5	0	63.5
70D/2C	0	0	0
100D/2	0	0	0
100D/1C	0	0	0
100D/1	1	1	2
AQUAX 70D/24F/2	0	0	0
30D/2	0	0	0
70D/1	0	0	0
N66 100D/1C	0	0	0
TOTAL	64.5	1	65.5

***청구내역**

사종	Dyed	Total	R/W	Total	합계
70D/2	US\$	US\$	US\$	US\$ -	US\$
70D/2C	US\$	US\$	-	US\$ -	US\$ -
100D/2	US\$	US\$	-	US\$ -	US\$ -
100D/1C	US\$	US\$	-	US\$ -	US\$ -
100D/1	US\$	US\$	US\$	US\$	US\$
AQUAX 70D/24F/2	US\$	US\$	-	US\$ -	US\$ -
30D/2	US\$	US\$	-	US\$ -	US\$ -
70D/1	US\$	US\$	-	US\$ -	US\$ -
N66 100D/1C	US\$	US\$	-	US\$ -	US\$ -
TOTAL		US\$		US\$	US\$

①

① US 516.³⁵

+ ② US 456.¹⁰

+ ③ US 1,046.⁸⁰

= US 2,319.⁸⁵

원산지 증명 ① 국내제조확인서(수출물품의 재료)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공급자가 제품생산자/수출자에게 제공하는 국내 제조 사실 증빙 서류
 ※ 이 서류 발급자는 직접 수출하지 않더라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료 보관 의무를 저야 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시] 제4장 2014.5.14

국내제조(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Inward Processing)

※ 위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2014년 01월 01일부터 2014년 03월 31일까지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Blanket period)		(From YYYY/ MM/ DD to YYYY/ MM/ DD)	
3.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선유(주)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063-830- 팩스번호(Fax. No.)063-834-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4.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Number)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No.)02-552- 팩스번호(Fax. No.)02-569-	
	주소(Address) 전자우편주소(E-mail)		

연번 (S/N)	품목번호(HS 6단위) (HS Code(6-digit))	품명·규격 (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가격 (Value)	주요 생산과정 (Production Processes)
1	520522	COMBED COTTON 20/1'S DYED YARN	10005.12KG		Dyeing

공급물품 연번 (S/N in Entry 5)	재료 연번 (S/N)	품목번호(HS 6단위) (HS Code(6-digit))	원산지재료 해당여부 (Originating Material(Y/N))	품명·규격/ (Description·Specification of Good(s))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가격 (Value)	비고 (Remarks)
1		520522	N (Spinning in ILSHIN)	100% COMBED COTTON SPUN YARN 20'S/1(RAW WHITE)	10005.12KG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Inward processing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4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7. 작성자 성명(Name of Declarer)	상호(Company Name)
작성일자 서명(Signature)	직위(Position)차장
년(YYYY) 월(MM) 일(DD) 2014/07/03/	전화번호(Tel. No.)063-830- 팩스번호(Fax. No.)02-569-

선유(주)
 대표이사
 김복임
 제조사: 선암사
 무역업

210mm×297mm(백상지 60g/㎡(제활용종))

원산지 증명 ③ 원산지증명서(수출물품)

Certificate of Origin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1.Exporter (수출자)	Name (성명)	INTERNATIONAL CO LTD		2. Blanket Period (원산지포괄증명기간) N/A YYYY MM DD YYYY MM DD (년) (월) (일) (년) (월) (일) From: ___/___/___ To: ___/___/___ (부터) (까지)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82-2-584-			
	Fax (팩스)	82-2-584-			
	E-mail (전자주소)				
3.Producer (생산자)	Name (성명)	TEXTILE		4.Importer (수입자)	Name (성명)
	Address(주소)	Gyeonggido 420-837			Address(주소)
	Telephone (전화)	82-32-613			Telephone (전화)
	Fax (팩스)				Fax (팩스)
	E-mail (전자주소)				E-mail (전자주소)
5. 원산지증명대상물품내역					
Serial No. (연번)	Description of Good(s) (품명 · 규격)	Quantity & Unit (수량 및 단위)	HS No. (품목번호 HS 6단위)	Preference Criterion (원산지결정기준)	Country of Oriain (원산지 국가)
N/A	RWSIZ-PA, S/#638023,WOMEN'S KNIT SOCKS. NO LACE OR NET.	15,990PACKS (=47,970PRS)	6115.95.9000	PSR	KR
<p>6. Observations: (특이사항)</p> <p>INV# - *Product Specific Rules for 6115.95 applied. *Sock knitted/linked in Korea using : Yarn Origin(s) = Korea *FIBER CONTENTS : 02-72% COTTON, 25% POLYESTER, 3% SPANDEX / 06-56% COTTON, 41% POLYESTER, 3% SPANDEX</p> <p>I certify that: 본인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상기 서식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증명서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 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본인은 이 증명서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뿐 아니라, 이 증명서의 정확성이나 유효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동사항에 대해서 이 증명서를 받은 관계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에 동의합니다.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United States of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해당 물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___1___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이 증명서는 첨부서류를 포함하여 총 ___1___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p>					
7. Authorized Signature (서명권자의 서명)			Company INTERNATIONAL CO LTD (회사명)		
Name: JOO EUN YOON (작성자 성명)			Title STAFF (직위)		
YYYY MM DD (년) (월) (일) 2014/2/16			Telephone : 82-2-584- Fax: 82-2-584- (전화번호) (팩스번호)		

1)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a)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가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WO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b)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나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SR
 Originating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6.1(c) of the Agreement(미합중국과의 협정 제6.1조 다호에 따른 원산지물품): PE
 * 수일자, 생산자 란은 기재 생략 가능하며, 한글본과 영문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한-미 FTA 원산지검증 현황

한-미 세관 합동 원지검증 제도

원지검증 단계별 조사내용 및 대응요령

기업체 원지검증 대응 사례

검증내용 8대 핵심포인트

참고자료

한-미 FTA 섬유류 현지검증 대응 가이드

발행일	2014년 12월
발행인	정재열 서울본부세관장
발행처	서울본부세관
제작	류원택 서울세관 FTA 집행국장 황남재 서울세관 FTA1과장 전병건 김대길 채경식 양현 김수미 도예희 김경하
감수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실
인쇄	아미고디자인(02-517-5043)
문의	서울세관 FTA1과(02-510-1561)

